

2024 현대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2024년 개정판을 발간하며

현대건설 임직원 여러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로 인한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윤리·준법 경영은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경쟁 질서가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정거래법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업무처리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 위반을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공정거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처리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개정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 및 심결례를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임직원 행동지침 및 질의응답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현대건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반과
그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편람을 기준으로 삼아 일상 업무에서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현대건설 자율준수관리자

법무실장 민기홍

민기홍

| 목 차 |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개요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1.1 의의	1
1.2 이해당사자	1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2.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1
2.2 CP의 핵심 요소	2

제2절 공정거래 제도 개관

1.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중요성	3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요	3
3. 공정거래법의 구조	4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1.1 의의	7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요건	7
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2.1 가격담합	7
2.2 거래/지급조건 담합	8
2.3 수량(물량)담합	8
2.4 거래지역(시장분할) 및 거래상대방 제한 담합	9
2.5 입찰담합	9
2.6 정보교환행위	10
2.7 입찰 관련 유의사항	11

3.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	
3.1 제도의 의의	12
3.2 면책요건	12
3.3 면책의 효과	13
4. 위반 시 제재	
4.1 시정조치	13
4.2 과징금	13
4.3 형사적 제재	13
4.4 합의 등의 무효	13
4.5 손해배상책임	13
4.6 이사의 책임	13
5. 행동지침	
5.1 업계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	14
5.2 정보교환 관련 행동지침	15
5.3 임직원 유의사항 및 금지사항	16
6. 체크리스트	19
7. 질의 및 응답	20

제4절 부당내부거래

1. 일반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1.1 개념	22
1.2 유형	22
2. 특수관계인 이익제공 금지	
2.1 개념	28
2.2 유형	28
3. 행동지침	33
4. 체크리스트	34
5. 질의 및 응답	36

제5절 기업집단규제

1. 기업집단지정제도

1.1 기업집단이란	37
1.2 기업집단의 범위	38
1.3 기업집단 계열편입 신고	38
1.4 기업집단 공통규제사항	39

2.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2.1 상호출자의 개념	39
2.2 예외인정	39
2.3 하지 말아야 할 일	40
2.4 법위반시 제재조치	40

3.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3.1 채무보증의 개념	40
3.2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40
3.3 하지 말아야 할 일	41
3.4 해야 할 일	41
3.5 법 위반시 제재조치	41

4. 내부거래 공시

42

제6절 기업결합

1.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의의	43
2. 기업결합규제 제도의 내용	43
2.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43
2.2 기업결합 신고제도	43

제7절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1.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개요

1.1 하도급거래란	48
------------------	----

1.2 적용대상 사업자	51
2. 하도급법상 규제내용	
2.1 원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51
2.2 원사업자의 주요 금지사항	52
2.3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52
3. 위반시 제재	
3.1 하도급 사건처리절차	53
3.2 벌점부과	54
3.3 주요 제재	55
4.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4.1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56
4.2 선급금 지급의무	58
4.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60
4.4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61
4.5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63
4.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64
4.7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66
4.8 부당한 특약의 금지	69
4.10 부당감액 금지	75
4.11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77
4.12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79
4.13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	83
4.1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84
4.15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84
4.16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	85
4.17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85
4.18 부당경영간섭 금지	85
4.19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85
4.20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87
4.21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87

5. 하도급거래 유형별 체크리스트	88
6. 질의 및 응답	90

제8절 표시·광고법

1. 개요

1.1 의의	95
1.2 위법성 판단기준	95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2.1 거짓/과장 표시·광고	96
2.2 기만적인 표시·광고	96
2.3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96
2.4 비방 표시·광고	96

3. 사례

3.1 거짓과장광고	97
3.2 기만광고	98
3.3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98

4. 표시광고법의 실효성 확보 및 위반시 제재

4.1 중요정보 공개제도	99
4.2 임시중지 명령제도	99
4.3 광고실증제도	100
4.4 시정조치	100

5. 주택분양 표시·광고 행위시 유의사항

5.1 면적에 관한 표시·광고	100
5.2 교통·거리에 관한 표시·광고	101
5.3 용자금·전세금에 관한 표시·광고	101
5.4 주택의 특징(재료·제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	102
5.5 주택환경·생활여건 등에 대한 표시·광고	103
5.6 견본주택·조감도 등	103
5.7 건물인증 등에 관한 사항	104

6.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행위시 유의사항

6.1 상가 등의 명칭	105
6.2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105
6.3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현황	106
6.4 상권	107
6.5 재산가치, 수익성	107
6.6 가격, 분양면적	108
6.7 품질, 부대시설, 별도계약품목	109
6.8 용자·전세금 등	109
6.9 건축허가 등 인·허가에 관한 사항	110
6.10 콘도미니엄 표시·광고	110
6.11 기타 거래조건	111

7. 부당표시광고 예시

7.1 주택(아파트 포함)	112
7.2 상가	112
7.3 오피스텔	112

8. 표시·광고 행동지침

제9절 약관법

1. 개요	115
2. 주요 내용	
2.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115
2.2 약관해석의 원칙	116
2.3 불공정약관조항	116
3. 불공정 약관의 효과	
3.1 시정조치	124
3.2 시정명령	124
3.3 금지 권고	124
3.4 약관의 심사청구	125
3.5 벌칙	125

제10절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1. 개요	126
2. 심판기능으로서의 공정위	127
3. 조사절차	127
4. 심판절차	129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개요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1.1 의의

- 당사의 자율준수프로그램
 -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기업의 자율준수를 위해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
- 현대건설의 자율준수편람(가이드라인)
 -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 가이드를 말함

1.2 이해당사자

- 「회사」 또는 「현대건설」은 「현대건설주식회사」를 말함
- 「계열회사」: 현대차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
- 「경쟁업체」: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
- 「거래업체(거래상대방)」: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공급업체
- 「직원」: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
- 「고객」 또는 「실수요자」: 직접 사용하는 수요자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2.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법」: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관계법령」: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 「법」 또는 「법령」: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입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

2.2 CP의 핵심 요소

2.2.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2.2.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

2.2.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

2.2.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

2.2.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2.2.6 내부감시체계 구축

-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함.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

2.2.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2.2.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함

제2절 공정거래 제도 개관

1.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중요성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독점규제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정책은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3대 경제정책을 구성하고 있음
-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업은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태료 및 벌점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당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업 및 관련 임직원들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공정거래 관련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이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되며, 기업의 모든 직원들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경영활동을 하여야만 회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요

-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해 1984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1999년 2월 5일에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음
-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규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은 총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음

※ 당사는 공정위 소관 법령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이 주로 업무와 연관 !

2. 공정거래 제도 개관

구 분	내 용
공정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법 법률 중 하나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법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력 집중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경쟁 제한하는 행위 금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부당 가격 혹은 조건 부과 등을 금지 ○ 부당공동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낙찰자 등을 임의로 결정 하는 행위 금지 ○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

3. 공정거래법의 구조

-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의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됨.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
- 하나는 ‘시장구조’(market structures)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래행태’(business conducts)임
- 시장구조란 일정한 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각 참여 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냄

2. 공정거래 제도 개관

- 예를 들어 독점(monopoly)이란 시장내의 사업자가 하나이고 그 점유율이 100%란 뜻이고, 과점(oligopoly)이란 시장내의 사업자가 소수(예 : 3 또는 5)이고, 그 사업자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는 뜻이 됨. 일반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의 시장구조 하에서는 경쟁이 없거나 치열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거래행태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행태가 어떠한가를 나타냄
-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담합(collusion)을 할 경우에는 시장 내의 사업자가 여럿이 있더라도 상호간에 경쟁을 하지 않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업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정하게 되며, 그 결과 독점적인 시장구조와 같은 좋지 않은 결과가 소비자에게 혹은 경제 전체에 생기게 됨
- 담합행위 이외에, 일반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배제행위¹⁾’(foreclosure)와 ‘약탈적 가격 설정 행위’(predatory pricing)가 있음
- 거래행태 규율
 -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 시장구조 규율
 - 공정거래법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공정거래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시장구조의 개선	거래행태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계열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경제력집중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금지 - 채무보증의 금지 및 보증해소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을 결정·유지·변경 - 거래조건·대금지급조건 결정 - 생산·출고·거래 등의 제한 등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1) 배제행위란, 자기의 경쟁상대가 시장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도.소매점에 판매 또는 접근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

- 건설업과 관련 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많았던 것이 입찰담합
- 입찰담합은 입찰자 간의 합의에 의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찰시스템을 부정하고 직접경쟁을 제한하는 것
- 세금으로 조달하는 공공공사에서 담합이 행해진다면 납세자인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됨. 이런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을 특히 중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 더욱이 공공사업의 입찰, 수주를 둘러싼 일련의 법 위반 사건으로 입찰담합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발주자와 입찰정보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협력)를 강조하고 있음. 이에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담합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고 있음

- 입찰담합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 입찰전에 참가자가 모여 입찰정보를 교환하는 것
 - 입찰참가자간에 수주예정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
 - 수주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
 - 입찰담합을 실시하기 위한 규칙(룰)을 작성하는 것
 - 사업자간의 수주수량을 논의하는 것
 - 발주자로부터 사전에 공사 등의 견적금액을 요구받은 경우 동업자간에 견적금액을 조정하는 것
 - 낙찰자와 기타 입찰참가자 간에 낙찰물건에 관해 하도급 거래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입찰가격을 듣는 것

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1.1 의의

-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 협정, 결의 또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Cartel)또는 담합이라고도 함

1.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요건

- 사업자 간에 공동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 포함함

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2.1 가격담합²⁾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
 -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

사 례	7개 제강사는 2010년~2018년(약 8년) 기간 동안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 하고 이를 실행
공정위 판단	철스크랩 구매 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가격담합 행위에 해당
제 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2.2 거래/지급조건 담합³⁾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말함
- 거래조건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 판매조건, 구매조건을 포함하는 개념임

사 례	
	국내 4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신규가입자에 적용할 보조금의 지급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모임을 2회 가진 후 보조금을 축소한 사실이 있음
공정위 판단	
	거래조건인 보조금의 지급규모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있어 중요한 경쟁수단이므로 각 사의 요금수준 및 구조, 서비스수준, 재정 상태는 물론 시장에서의 인지도, 타사와의 경쟁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거래조건 담합에 해당
제 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3 수량(물량) 담합⁴⁾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 유형
 - 사업자간 시장점유율에 대한 합의
 - 판매수량, 물량배분에 대한 합의 등

사 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19개사 건설사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로 지분율 배분 합의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공구를 사전에 서로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업체별로 공급물량을 할당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시장공급 물량을 제한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제 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

4)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2.4 거래지역(시장분할) 및 거래상대방 제한 담합⁵⁾

- 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거래지역 제한 합의)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고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2.5 입찰담합⁶⁾

-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 **입찰가격담합**
 - 사업자가 공동(이하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서는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사 례 1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13개 건설사들이 '05~'06년(1차-5건), '07년(2차-3건), '09년(3차-4건) 등 3차례 총 12건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합의, '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가격 결정 후 입찰 참여
공정위 판단	
	입찰과정에서 낙찰자 및 들러리 합의를 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에 해당
제 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

5)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 7)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8호

3. 부당한 공동행위

사 례 2	
	건설사들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 15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리리를 사전에 합의 하여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
공정위 판단	
	각 공구별로 물량을 배분하여 낙찰사들리리를 사전 합의한 것으로 입찰담합에 해당
제 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

2.6 정보교환행위⁷⁾ ※ 2021. 12. 30 시행

-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
 - 제9호의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합의는 정보의 “교환행위” 자체에 대한 합의를 의미
 - 정보교환행위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실질적 경쟁을 제한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
- 정보교환의 개념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
 -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일간지 등에 공개 및 공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아 규율범위에서 제외
 - ※ 단 공개 공표 전에 이미 경쟁사 간 은밀하게 정보교환이 선행된 경우는 공개 공표와 무관하게 규율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 ① 상품·용역 원가, ② 출고량·재고량·판매량, ③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 ④ 기타 영업활동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영상 정보
- (위법성 요건) 어떠한 정보교환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함
 - 모든 정보교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 재고,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이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된 것으로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위법
 - ① 합의의 성립 : 경쟁사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명시적 의사연락 (합의서·구두약속)이 있는 경우 정보교환 합의가 성립. 또한 명시적 의사연락이 없더라도 경쟁사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는 묵시·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의 경우

7)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3. 부당한 공동행위

- ② 경쟁제한 :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시장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특성, 점유율,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의 양태, 정보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③ 효율성 증대효과 : 정보교환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과창출에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 효율성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합의의 추정) ①경쟁사 간 경쟁변수(가격 등)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②그 외형상 일치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이 있는 경우 경쟁변수 관련 담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
 - ① 외형상 일치 : 경쟁변수의 변동폭 시점이 동일할수록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완전히 동일해야지만 외형상 일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 ② 필요한 정보의 교환 : 교환된 정보가 가격 생산량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인 경우 의사결정 시점 직전에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2.7 입찰 관련 유의사항

2.7.1 수주자의 선정에 관한 행위

-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유의사항]

- ① 수주 의욕의 정보교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주 의욕, 사업 활동실적, 대상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안됨
- ② 입찰가격 조정 등
 - 사업자는 다른 입찰참가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입찰참가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안됨
- ③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이익 공여
 - 사업자는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하여 업무발주, 금전지불 등의 이익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안됨
- ④ 수주예정자 결정에 대한 참가 요청, 강요 등
 -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예정자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불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⑤ 사업자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안됨

3. 부당한 공동행위

2.7.2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 최저 입찰가격 등의 결정
 - 사업자는 입찰에 관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안됨



[유의사항] :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안됨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또는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안됨

2.7.3 수주수량 등에 대한 행위

- 수주수량·비율 등의 결정
 - 사업자는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여서는 안됨

3. 자진신고자 감면제도⁸⁾(리니언시 제도)

3.1 제도의 의의

-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부당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낮추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
 - 카르텔 참여 기업의 결속력을 약화시켜 카르텔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

3.2 면책요건⁹⁾

- ①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가
- ②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입수하기 전에(두번째 신고자, 조사협조자는 불필요)
- ③ 카르텔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 ④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
- ⑤ 카르텔을 중단할 것
- ⑥ 카르텔을 강요한 자가 아닐 것

8) 공정거래법 제44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등】

9)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1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3.3 면책의 효과

3.3.1 필요적 감면

- 첫 번째 자진신고자 : 과징금, 시정조치 완전 면제
- 첫 번째 조사협조자 :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는 면제 또는 감경
- 두 번째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 : 과징금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

4. 위반 시 제재

4.1 시정조치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4.2 과징금

-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의 **20% 범위** 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법 위반 관련 매출액 : 위반행위 기간중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함
- 입찰담합의 경우 발주처에 범위반사실 통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 제재)

4.3 형사적 제재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

4.4 합의 등의 무효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외적 인가 등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간 이를 무효로 함

4.5 손해배상책임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짐 (최대 3배)

4.6 이사의 책임

- 대법원, 주주대표소송에서 대표이사 책임 인정¹⁰⁾
- 4대강 담합 사건에서 **모든 이사(대표이사, 사내·사외이사)의 책임 인정**¹¹⁾

10)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

11)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79347

3. 부당한 공동행위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¹²⁾

5. 행동지침

5.1 업계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

5.1.1 업계모임 참여원칙

1.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조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업계모임 참여는 절대 금지함**
※ 경쟁사와의 접촉은 가능한 피하며, 필요시 최소한의 접촉
2. 업계모임 참석 도중 담합금지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즉시 퇴장 및 컴플라이언스팀에 신고

5.1.2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은 그 형태와 구체적 논의내용,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참가사실만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추정된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모든 임직원은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

1. 업계 공식모임의 경우 사전에 회의 안건을 받아보고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참석하도록 하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 참석하지 않음
2. 가격(입찰가격, 낙찰자 결정, 들러리 등), 거래조건 등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음
3. 담합은 합의 사항의 실행 없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협의나 결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며, 법 위반 가능성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컴플라이언스팀 또는 정책지원1팀과 협의
4.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하지 않고 침묵하여도 해당 행위가 참가로 간주되므로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즉시 그 장소를

12)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의 형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에 과함

3. 부당한 공동행위

이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거부 의사를 명확히 알립

5. 업계모임에서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의견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정보보고, 활동보고 등의 형식을 빌려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면 담합으로 오인되거나 담합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허위의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함

※ 당사는 외부 출장 시 업계모임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자율준수 체크리스트가 확인되어야 출장 상신할 수 있습니다. ('23.10월 부)

5.2 정보교환 관련 행동지침

5.2.1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관련 지침

1. 입찰조건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말 것
 - 이메일, 문자, 전화 통화 등 일체의 수단이 포함됨
 -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초안 또는 결정(안) 등을 보여주거나, 주고받는 행위도 포함됨
2. 경쟁사에게 향후 입찰계획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말 것
3. 경쟁사로부터 위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길 것
4.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시자료나 협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입수한 경우 그 입수 경위와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둘 것
5. 경쟁사 관련 정보를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경우에도 이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시장 상황, 고객 수요 및 비용 등 다양한 경쟁적 소요를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할 것

5.2.2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지침

1.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하고 거래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문서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할 것(특히 경쟁사가 유사한 시기 또는 내용으로 입찰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의 사용에 주의할 것

3. 부당한 공동행위

[사용주의 표현 예시]

- 경쟁사/동종사와“협력”강화
- 업계 간 Win-Win 체제 구축, “공조”, “협조” 체제 구축
- “입찰 예상가 파악”
 - * 경쟁사로부터 가격정보를 수집하는 것인지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음
- 경쟁사 협업으로 입찰 조건 변경
- “형식적 입찰 참여”
 - * 들러리 담합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 존재
- 업계 공동 대응(예정), 업계 차원의 검토
- 타사와 정보 “공유”
- “A사 실행 투찰결정“, “B사 2023.00.00.부터 00공사 불참 예정”
- “(출혈)경쟁 자제”, “(출혈)경쟁 지양”
- “공감대” 형성
- “시장 안정화” 협조, “시장 정화” 방안, “시장 질서“ 유지, 개선 필요
- “당사 구역”, “타사 구역”
- “본 문서는 읽은 후 폐기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타사와의 교류 내용
- (경쟁사와) ... 하기로 협의
- (경쟁사는) ... 경 거래조건을 ... 로 변경 예정
- (경쟁사는) ... 에 대해 00 입장 표명
 - * 경쟁사와 의사결정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우려

3. 문서 작성 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할 것
4. 문서규정의 보존기간을 준수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의 메일, 기록, 메모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말 것
5. 회사의 중요정보는 주관부서에서 자체 관리 및 정보보안을 철저히 하고 담당자 외 보관하지 않도록 할 것
6. 회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를 회의 등의 사유로 배포시 회의 종료 후 필히 회수하고 메일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을 지양할 것

5.3 임직원 유의사항 및 금지사항

당사 임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경쟁사와의 접촉 또는 정보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료의 작성 및 보관은 안되며, 부득이하게 경쟁사와의 접촉 또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적절한 사내 절차를 거쳐 적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시에 충분히 구비해야 합니다.

5.3.1 유의사항

- o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업무상 목적으로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문제가 될 경우 회사에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 임직원 개인 역시 심각한 현실적·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 o 상급자/직책자의 지시가 경쟁사 정보에 관한 것일 경우, 내부 규정 및 사내 절차에 따라 상급자/직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문제를 상기시키고, 필요할 경우 지시자와 사전에 컴플라이언스팀 및 정책지원1팀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o 경쟁사와 함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경우, 회의에 앞서 논의 안건을 요청하여 입수하고 해당 안건이 경쟁사와 논의하기에 적합한 주제일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 o 경쟁사와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또는 민감한 사항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전자우편(e-mail) 등 기록이 남는 형태의 연락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 더욱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o 경쟁사와의 회의 시 공정거래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공사의 발주, 공사금액, 거래조건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경우, 명시적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즉시 자리를 떠나기 바랍니다.
 - ※ 부적절한 논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침묵한 경우에도 암묵적 동의로 평가될 수 있음
- o 경쟁사로부터 논의가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문의가 올 경우, 답변 거절 바랍니다. 금지되는 사항인지 의문스러울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또는 정책지원1팀과 논의하여 금지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의에 대해 대응 바랍니다.
- o 적법한 방법으로 획득한 경쟁사 정보를 내부 보고 등에서 인용하는 경우 적절한 출처를 명시하고 근거를 첨부하거나 정보의 획득 과정을 기록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적법한 정보습득 경로의 예시 : 공공문서/기록, 언론 보도자료, 마케팅·리서치회사의 자료, 발주처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경쟁사 관련 정보
- o 입찰가격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당사의 내부결정이 있을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내부적인 근거를 명확히 기록하여 해당 결정이 당사의 자체적인 검토와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 o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조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더라도 회사/개인 문서를

3. 부당한 공동행위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은닉하지 말고 사전에 컴플라이언스팀 또는 정책지원1팀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타인이 하고 있거나 예전부터 해오던 관행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법 위반의 의심이 가는 행위를 사전 검토 없이 진행하면 안됩니다. 적법한 행위인지 확실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또는 정책지원1팀과의 논의 후에 진행하기 바랍니다.

5.3.2 금지사항

- “이 정도는 얘기해도 괜찮겠지.”, “회사를 위한 행위이니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정보 교환 또는 경쟁사와의 합의가 포함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경쟁사의 임직원인 경우 영업활동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 등은 피해야 합니다.
- 경쟁사 임직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잦은 연락을 하는 행위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한 논의와 관련 정보교환은 금지합니다.
 - ▷ 입찰가격, 공사원가, 거래조건, 시장점유율, 연구 및 개발자료, 수주 전략, 홍보계획 등
- 내부 문서, 비공식 문서, 개인 일지 등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거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민감한 사항에 관한 논의, 정보교환,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인될 만한 표현은 장난스러운 표현이나 농담으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장난스러운 표현이나 농담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진술 또는 기재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사업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건설 관련 전문지 등 언론에 대하여 사전에 당사의 구체적인 수주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대략적인 공사 수주/수행 관련 동향이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협력업체 등 경쟁사가 아닌 제3자를 통해 경쟁사의 정보를 취득한 경우 그러한 정보 취득 경로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6. 체크리스트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가격협외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다른 사업자와 가격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한 사실이 있는가?
물량조절		·다른 사업자와 공구/구역 별 입찰계획, 입찰물량등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있는가?
입찰		·경쟁입찰 시 사전에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 입찰금액, 입찰물량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입찰가격, 입찰수량, 입찰거래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협의하거나 논의한 경우가 있는가?
경쟁업체 모임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 ·경쟁사 모임에서 예고 없이 가격, 입찰 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거부 의사를 알렸는가?
문서작성		·당사가 독자적으로 사업 판단을 통해 가격 등을 결정한 경우, 관련 내용(근거)이 문서내용에 적시되었는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이나 거래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협력”이나 “공동” 등의 문구를 적시하였는가? ·문서 작성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 인용시 출처를 명확히 하였는가?

7. 질의 및 응답

Q : 업체 관계자들끼리 식사자리에서 가끔 가격 정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A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고, 판례 역시 암묵적 요해를 담합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의자리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합의로 인정된다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계 관계자 만남에서는 항상 주의를 요함.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담합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Q : 합리적 가격으로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들과 구매가격을 합의하여 제품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때 제품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가?

A :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의 취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다면 공급자 또는 수요자인지를 불문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Q : 합의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가?

A : 공동행위 사업참여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및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나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음

Q : 관련업체들의 업계의 기술향상 및 품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다 같이 모여 의견을 나눈 후 기술개발 및 사업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A :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공정거래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제4절 부당내부거래

- 주로 계열회사 등 특수한 관계가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 체크하여야 할 부분으로 제3자와의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구성하는 경우 특히 유의하여야 함
- 1996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에 부당지원행위금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이후 공정거래법은 2013년 8월 13일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나누어 규제함

구 분	일반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 항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거래법 제47조
규제대상	모든 사업자	총수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
지원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사에 한정하지 않음)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20%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그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규제목적	공정거래저해성(특히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금지
규제내용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② 상당한 규모의 거래 ③ 통행세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② 사업기회의 제공 ③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
안전지대 (적용제외)	① 자금·자산·부동산·인력 : 거래당사자 간 해당연도 거래총액 30억 미만인면서 정상가격(금리)과 7% 차이 미만 ② 상품·용역 : 거래당사자 간 해당연도 거래 총액 100억 미만인면서 정상가격과 7% 차이 미만 (상당한 규모 지원행위의 경우,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 '22.12.9. 심사지침 개정·시행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미만인 경우 ② 상당한 규모의 거래 :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이 12% 미만인 경우
위반시 제재	① 시정조치 :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 부과 ② 과징금 :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 또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 ③ 공정위 고발에 따른 형사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④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1. 일반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1.1 개념

(1) 부당한 지원행위

- 지원주체(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지원을 받는 회사(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특수관계인 등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상당히 유리함에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2) 위법성 판단 기준

○ 지원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
- 지원행위 여부 판단기준인 「정상가격」 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인간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함
-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가격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로 추정

○ 부당성

-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등 참고)
-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부당성 판단 기준
 -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
 -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
 -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다른 사업자의 신규시장진입 저해

-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거래상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당지원 행위 성립요건으로서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적용 제외

- 자금·자산·부동산·인력 : 거래당사자 간 해당연도 거래총액 30억 미만이면서 정상가격(금리)과 7% 차이 미만
- 상품·용역 : 거래당사자 간 해당연도 거래총액 100억 미만이면서 정상가격과 7% 차이 미만 (상당한 규모 지원행위의 경우,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 '22.12.9.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1.2 부당한 지원행위 유형

1.2.1 자금 지원행위

(1) 개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 정상금리)
- 개별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개별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상금리

(3) 유형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1.2.2 자산 지원행위

(1) 개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 나 기타 자산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정상가격(시가)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3) 유형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해 저가로 계열사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계열사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 계열사로부터 임대료 수령을 지연
-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하도록 한 경우

1.2.3 상품 및 용역지원행위

(1) 개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상품, 용역거래의 지원행위 여부 판단

-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 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음

(3) 유형

-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하인수행위,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원재료의 고가매입
- 대금결제방식을 기존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1.2.4 인력 지원행위

(1) 개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2) 정상급여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
-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정상급여로 간주(매출규모에 따라 안분)

(3) 유형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과건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1.2.5 물량 몰아주기

(1) 개념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계열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물량을 몰아주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판단 기준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정당화 사유 고려: 당해 거래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3) 유형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대법원 판례 입장)
-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되며,
-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
-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며,
 -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1.2.6 통행세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1) 개념

-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함

4. 부당내부거래

(2) 유형

-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유형(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전혀 혹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경우
-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형(추가된 거래단계의 회사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만 그 대가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사 례 1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공정위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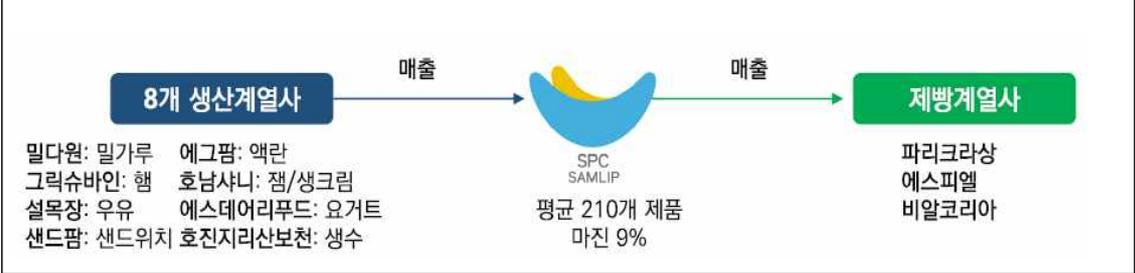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웰스토리에게 지원행위를 통해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웰스토리는 내부거래를 통해 취득한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배당 실시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함. 또한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발판으로 단체 급식 경쟁입찰 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독립 급식업체의 생존을 위협했고, 웰스토리의 경쟁 여건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제고되었음

4. 부당내부거래

제 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경영진 및 법인 고발 ('21.6.24)
-----	--------------------------------------

사 례 2

기업집단 에스피시(SPC)계열회사들이 (주)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
 ① 사니의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삼립이 사니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
 ② 파리카라상과 사니가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
 ③ 파리카라상, 에스피엘릿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의 원재료/완제품을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하여 구매 (통행세 거래)**



공정위 판단

기업집단 에스피시(SPC)는 총수가 관여하여 그룹 차원에서 계열회사들이 (주)SPC삼립(이하 삼립)을 다양한 지원 방식을 통해 장기간 부당 지원하였음

제 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고발 ('20.7.29)
-----	------------------------------

사 례 3

하이트진로는 박태영이 서영이엔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엔티에 막대한 부당 이익을 몰아줌. 당초 삼광글라스(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켄을 서영이엔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고, 나중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켄의 원재료)과 글라스락 캡(유리밀폐용기뚜껑)을 서영이엔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함. 특히, 서영이엔티가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 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지원까지 함.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중소기업에 각종 피해를 끼치며 총수2세의 경영권 승계구도를 구축함.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주)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엔티(주)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주)를 교사하여 장기간(2008년 4월 ~ 2017년 9월) 부당 지원한 행위로 판단

제 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경영진 및 법인 고발
-----	---------------------------

2. 특수관계인 이익제공금지

2.1 개념

(1) 대상

- 총수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일가 개인이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와 거래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금지 **※ 공정거래법 개정 ('21.12.30)**
* 지분율은 의결권 유무와 무관
- 지원주체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말함
-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 특수관계인: 동일인(총수) 및 그 친족(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함)에 한정

(2) 위법성 판단기준

- 부당성
 - 행위주체·객체·특수관계인간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경제적 상황,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하여 부당한 이익 판단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개정·시행 ('23.5.22)
- 적용 제외
 - 상당히 유리한 조건 : 실제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해당연도 거래 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원) 미만인 경우
 - 상당한 규모의 물량 :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

(3) 제재

- 사익편취 규정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제재가 가능하고, 거래객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 거래를 지사·관여한 경우도 벌칙을 부과받을 수 있음

2.2 유형

2.2.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1) 대상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함

(2) 적용제외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연간 총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4. 부당내부거래

2.2.2 사업기회제공

(1) 대상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2) 적용제외

-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2.2.3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1) 대상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당해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총수일가)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 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가 될 수 있음

(2) 적용제외

- 거래당사자 간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

①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 비용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개선·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경쟁력이 부품이나 소재,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의 품질 혹은 경쟁력과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일감을 맡기는 것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로 인정될 수 있음
-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 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단일 상품거래가 아닌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

4. 부당내부거래

- 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음
- 회사가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계열사가 된 것이므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음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 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거래시 종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변경 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거나 품질의 안전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음

②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말함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공장·연구개발시설·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기술 및 정보가 상품 또는 용역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보안성을 인정할 수 있음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상호간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는 거래라 할 수 있음

③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를 말함
- 긴급성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보안성 사유를 판단할 때보다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정치·사회적 변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단순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히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공여

- “통상적이고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할 경우 정상가격 거래도 문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일반 부당지원 행위로서 물량몰아주기와 달리 ‘상당히 유리한 조건’ 및 ‘부당성’ 이 불필요

4. 부당내부거래

사 례 1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특수관계인 보유)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 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함

공정위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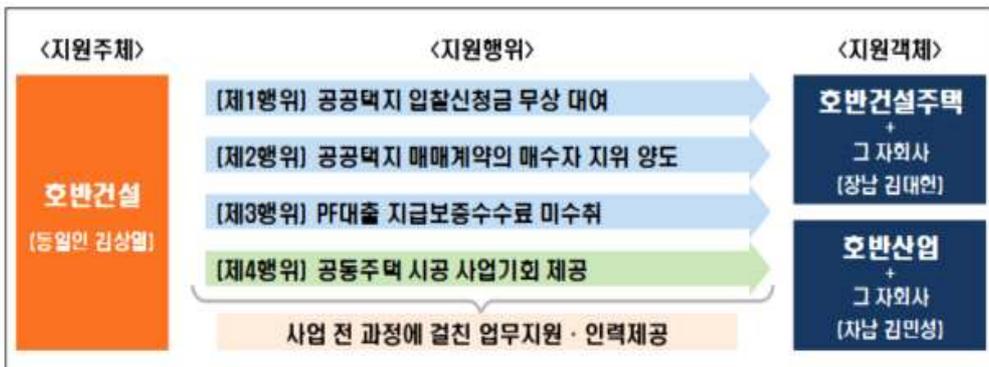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
 → 호텔/골프장 이용은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인 효율성/긴급성/보안성 불인정

제 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 례 2

* 최신 심결례 ('23.6.15)

(주)호반건설은 복수의 회사를 공공택지 추천 입찰에 참가시켜(소위 ‘벌떼입찰’)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하여,동일인 2세 소유의 회사들(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및 그 100% 자회사)로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



공정위 판단

호반프라퍼티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호반이 계열회사에 현저한 규모로 공공택지를 전매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 7호 및 제23조의2(부당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위반

제 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608억) 부과

4. 부당내부거래

사 례 3	
<p>대림산업(주)은총수일가 100% 자회사인 APD(주)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귀속시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자회사인 구(舊) 오라관광(주)이APD와 유리한 조건(고율의 수수료 지급)으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함</p> <div data-bbox="290 398 1289 65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16px; width: 626px;"></div>	
공정위 판단	
<p>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위법행위로 대림산업이 APD에게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기회제공행위로, 이후 오라관광이 APD에 유리하게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는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로 제재</p>	
제 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13억) 부과, 고발 ('19.5.2)

3. 행동지침

계열회사와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이에 앞서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또는 정책지원1팀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유의사항

- o 계열사와의 거래 시 거래 개시단계에서 거래 필요성, 계열회사 선정 이유, 계열회사의 역할이 명확한지 확인
- o 계열내 거래를 하게 된 내용적/절차적 적정성 점검
 - 시장조사, 비교견적, 경쟁입찰 여부 등
- o 수의계약 시 합리적 사유 여부 점검
 - 거래규모/횟수/연속성,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 관련시장 상황,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의 정당화 사유
- o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 여부 점검
- o 계약갱신 시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
 - **독점시장에 신규진입자가 있을 경우 경쟁입찰 실시**

3.2 금지사항

- o 적정한 단가 협상없이 계열회사가 제시하는 단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계열회사에 원하는 단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o 계열사와 거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 등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진행
- o 계열사와의 거래조건을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 비계열회사와의 거래조건과 다르게 설정

4. 체크리스트

항 목	구 분(법조항)	점검사항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자산 및 상품 등 지원	<p>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지원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였는가?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 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는가?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지급 하였는가?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상 당의 수익을 얻게 하였는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았는가?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사에 대하여 인력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 하였는가?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 충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였는가?

4. 부당내부거래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물량물아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 물량을 몰아주었는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였는가?
통행세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및 상품 등의 부당한 이익 지원	공정거래법 제47조 (사익편취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계열회사와 거래 시 비계열사의 금액 조건과 7%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있는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헐값 제공 또는 고가 매입)의 거래인가?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다른 계열사에게 제공하였는가?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제공하였는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 시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의 정당한 사유를 검토하였는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사와 매출 거래 시 계열사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 하였는가? ·그러한 근거자료(품의서, 계약서 등)가 있는가?

5. 질의 및 응답

Q :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A :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Q : 용역 등의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 회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가?

A :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용역 등의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않는 것은 그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작위 행위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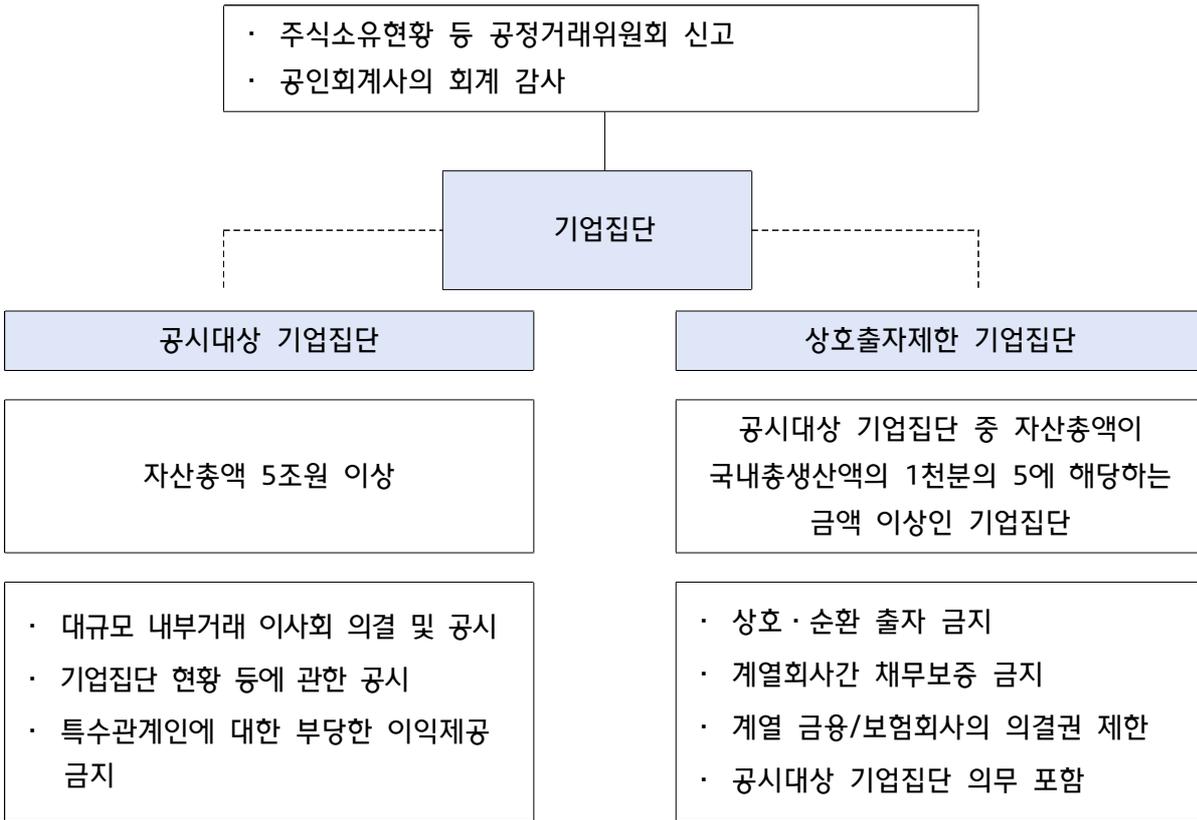
Q : 부당한 지원행위에서 정상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A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

Q : 부당한 지원행위에서 지원금액의 의미는 무엇인가?

A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제5절 기업집단규제



1. 기업집단지정제도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함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 공정거래법은 규모가 큰 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제력 집중의 원인이 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배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두어 규제하고 있음

1.1 기업집단이란

- 동일인(사람 또는 회사)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1.2 기업집단의 범위

지분율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최다출자자인 경우 - 동일인 관련자: 친족,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친족: ① 배우자, ② 4촌 이내 혈족, ③ 3촌 이내 인척, ④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5,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⑤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친족 범위 조정. 2022. 12. 27. 개정 시행령 시행) - 주식의 취득/소유는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관계 기준
지배력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 이상 선임 ○ 동일인이 조직변경, 신규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영향력 행사 ○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 회사 간 임원겸임, 인사교류 ○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와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 행위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1.3 기업집단 계열회사 편입 신고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동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함
 -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계열회사 편입 신고’ 라고 통칭
 - 편입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위반이 되어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법 제126조 제3호)될 수 있으니 유의!
- 공정거래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열회사로 편입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심사하여 편입조치
- 편입신고 기준일은 “계열회사 변동사유 발생일”을 의미
 - ①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한 경우
 - ② 회사의 임원선임으로 계열회사가 변동한 경우
 - ⇒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등에서 임원선임의결된 날
 - ③ 신규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 회사의 설립등기일
 - ④ 그 외 ⇒ 주요 주주와의 계약·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 개발사업 등 투자법인 출자 시, 계열편입 요건 사전 확인 후 신고 필요 !!

1.4 기업집단 공통규제사항

1.4.1 주식소유현황 등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내용

-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 당해 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 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등
- 신고시기 : 매년 4월말까지
- 위반시 제재 :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1억 이하의 벌금

1.4.2.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위반시 제재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

2.1 상호출자의 개념

- 2개 계열회사 간의 상호출자는 상호보유주식의 규모나 지분율의 과다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됨
- 그러나, 비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는 금지되지 않는데, 이는 상호 간의 출자가 별개의 의사결정 주체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임

2.2 예외인정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호출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호출자가 인정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6개월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므로 6월 이내에 두 회사 중 하나의 회사는 상대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함(법 제21조 제2항)

2.3 하지 말아야 할 일¹³⁾(탈법행위)

-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

13) 공정거래법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제1항

5. 기업집단규제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신탁회사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2.4 범위반시 제재조치

- 당해 행위의 금지, 주식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
- 주식 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 불가 조치
- 위반한 금액의 20% 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3.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지

3.1 채무보증의 개념

-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과 지급보증)을 받을 때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을 말함
 -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과 기업 간에 직접 행하는 보증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 해외현지법인 간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 법인 간 보증도 법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3.2 제한 제외대상 채무보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 ①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양도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②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 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증
 - ① 한국수출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 ②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 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유보금환급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5. 기업집단규제

- ③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 ④ 인수인도조건 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 수출어음의 국내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 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 기타 공정위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 ⑥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 ⑦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공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의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재보증하는 경우

3.3 하지 말아야 할 일(탈법적 채무보증)

- 다음의 행위는 탈법적인 채무보증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함
 -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병존적 채무인수)
 -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교차 채무보증)

3.4 해야 할 일(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신규지정이나 새로이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 상당한 채무보증 이 존재하므로 이에 유의함

3.5 법 위반시 제재조치

- 관련 채무보증의 해소 등 시정명령
- 법 위반 채무 보증액의 20% 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내부거래공시

- 적용대상회사
 -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포함(공정거래법 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연도 중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 편입된 날부터 적용
- 적용대상거래
 - 적용대상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 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당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이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대규모내부거래 행위
 - (1)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 기준
 - (2)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전일의 자본금기준
 -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함
 - (3) 적용대상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포함
 -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인수한 경우에도 내부거래에 해당
 - (4) 특수관계인이란?
 -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 관련자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려는 자

제6절 기업결합

1.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의의

- 기업결합이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 인적, 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공통의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

2. 기업결합규제 제도의 내용

2.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결합으로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다만,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크거나 희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신고 제도>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관한 원칙 규정은 제9조로서 누구든지 기업결합의 방법을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공정위는 사업자가 그 규모를 불문하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인지하여 금지할 수 있음. 그런데 시중에서 일어나는 기업결합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심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여 공정위가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신고제도의 의의임.

※ 당사의 경우, 개발사업 등의 투자법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필요

→ 법인 설립 및 임원 겸임 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2.2. 기업결합 신고제도

2.2.1. 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

6. 기업결합

구 분	내 용
주식취득	1. 다른 회사의 무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20%(비상장법인) 또는 15%(상장법인) 이상 취득하는 경우 2. 20%(또는 15%) 이상 보유한 후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계열회사 임원 겸임 제외)
합병·영업양수	다른 회사와 합병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1) 주식취득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상장법인은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 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합병, 합자, 유한회사의 지분을 포함
-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며 따라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 없음. 다만, 의결권 없는 주식이 이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
-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 산정이나 최대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산(법 제11조 제5항)
-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란 최대 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 추가 취득으로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최초 20% 주식 취득으로 이미 최대출자자가 된 경우 그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미발생
- 다만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 취득자가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 시 중간취득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매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매매각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2) 임원겸임 (법 제11조 제1항 3호, 제9조 제1항 제2호)

- 대규모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자신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에게 신고의무 발생
- 계열회사 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임원겸임은 일방 당사자가 대규모회사임에도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신고의무 발생)
-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 신고 불요

6. 기업결합

(3) 합병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 다른 회사와 신설, 흡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신고회사로서 신고 의무를 가짐
- 합병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존속예정인 회사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흡수합병의 경우) 결합 당사 회사가 연명으로 신고(신설합병의 경우)

(4) 영업양수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4호)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임차
- 경영의 수입
-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에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조직, 인력, 계약관계 등 포함)을 의미
 - * 판매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
 - “주요부분”이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영업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두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함)

(5)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5호)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인수비율을 불문하고 신고해야 함
- 최대출자자인 신고회사,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가 규모 요건(3000억원, 300억원) 충족시 나머지 회사의 동 요건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
- 최대출자자인 신고회사 자체가 신고요건인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 없음

2.2.2. 신고대상 회사 규모

-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원, 타방은 300억원을 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
- 이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 반면,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 계열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음

2.2.3. 기업결합 신고 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 의무자
주식 취득	취득회사
임원 겸임	겸임 임원 소속회사
합병	흡수합병(존속회사), 신설합병(당사회사 공동)
영업 양수	양수회사
회사설립 참여	참여회사 중 최다출자자 (요건 충족 상대회사 전부를 상대로 신고)

2.2.4. 기업결합 신고 시기

(1) 사전신고

○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 설립참여**

- 대규모회사 :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
- 신고시기 : 계약 체결일/주총(이사회) 의결일 ~ 기업결합일
 - 기업결합일: 주식대금지급일, 합병등기일, 양수대금지급일, 주식대금납입일
-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이행행위를 할 수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간은 30일 + 90일 (간이심사의경우 15일)
 - 위 기간 도과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행행위 가능

(2) 사후신고

- 사전신고 이외의 모든 신고 (**대규모 회사의 임원겸임** 포함)
- 신고시기 :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2.2.5. 기업결합 신고의 예외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2)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3)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법 제1항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6. 기업결합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같은 법 제142조 제1항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제외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임원겸임 신고의무는 예외대상 아님 (신고해야 함!)

2.2.6 간이신고대상 ※ 22.12.30 개정 : (6)~(9) 추가

-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특수관계인인 경우
- (2)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표이사를 겸임 제외)
- (3)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상 유동화 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7)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 (8)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주식취득 또는 합작회사 설립과 동일하거나 연속되는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임원겸임인 경우
- (9)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승인받은 결합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간이신고대상인 경우 신고내용은 동일하나 첨부서류 간소화됨

–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 당사회사 주주현황, 계열회사 현황 등을 기재하지 않음

2.3.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 (시행령 별표7)

구 분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 미만	2천억~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신고회사 매출 2조 이상	사전신고 대상 (법인설립 등)	3,0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사후신고 대상 (임원겸임)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제7절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

1.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개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는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의 차이로 지배·복종의 귀속관계로 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의 수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하도급법은 특별법이면서 강행법규이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에 의해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하도급법의 특별법적 성격
 - **하도급법 우선 적용**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름¹⁴⁾
 -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보다 우선하여 적용¹⁵⁾
 - **발주자가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 (법인)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1.1 하도급거래란

1.1.1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그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
 - 건설업자가 시공 자격 있는 공사를 자격 있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 위탁
 - 시공자격 없는 건설업자, 무등록(무면허), 시공참여자(노무자 및 장비 대여자 등),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는 법 적용 안됨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14) 하도급법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5) 하도급법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1.1.1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위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동법에 의한 건설업자에게 당해 공종에 대하여 시공을 위탁한 경우이어야 함.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 등】에 의해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당해 공종의 시공자격을 가진 다른 등록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동 공종에 대한 시공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에도 건설위탁에 해당. 다만, 여기서 부대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써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등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어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예시

전기공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가 주인 공사를 전기공사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뢰한 경우는 시공을 위탁한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음. 다만,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위탁”임
 토공사에만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미장공사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미장공사를 시공 의뢰한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음

1.1.1.2 전기공사법상의 건설위탁

- 전기공사업자의 건설위탁
 - 전기공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건설위탁
 -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

1.1.2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하는 것을 말함¹⁶⁾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 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을 말하며(레미콘, 아스콘)
 - 단, 레미콘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 기준 대구, 광주, 대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및 제주도만 적용됨¹⁷⁾

16) 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17)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제5항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 건설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이 제조위탁임¹⁸⁾

1.1.3 용역위탁

1.1.3.1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

-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 및 특정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개발·공급을 포함한다)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개발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치 등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시스템개발을 포함한다)
 - 나.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편성·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동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게임물
 - 다. 「방송법」 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

1.1.3.2 역무의 공급 위탁

-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타당성조사, 설계,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8) 불박이장,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1.2 적용대상 사업자



1.2.1 법 적용 대상 기간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7년)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신고 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함¹⁹⁾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건설위탁은 당해 공사가 완료된 날**을 의미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

2. 하도급법상 규제내용

2.1 원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의무사항	관련 조항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제3조
선급금 지급	제6조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제9조
하도급대금 지급	제13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13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	제16조
공급원가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

19) 하도급법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2.2 원사업자의 주요 금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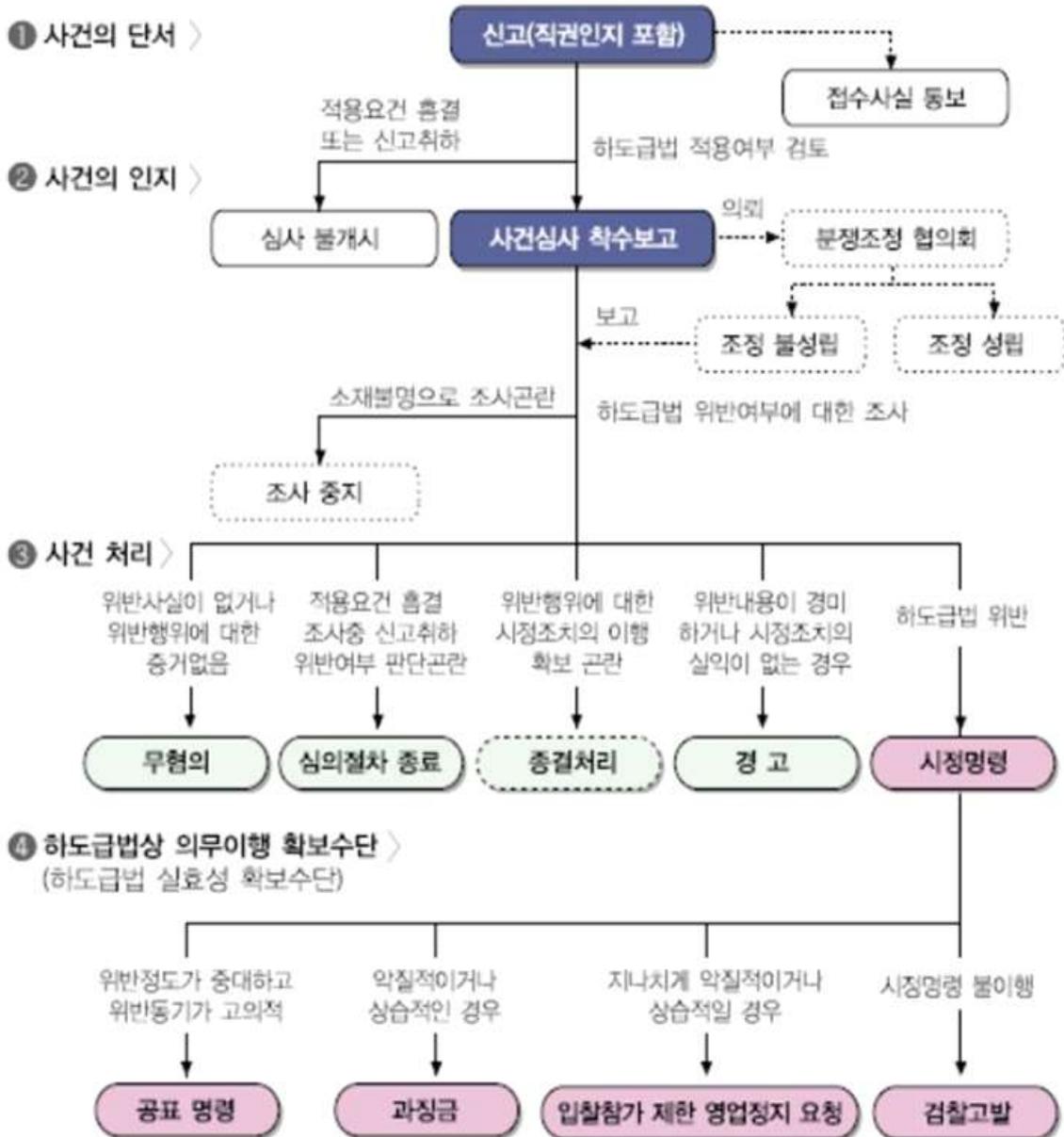
금지사항	관련 조항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4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제5조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제8조
부당반품금지	제10조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제11조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제12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 강요 및 요구	제12조의3
부당한 대물변제	제17조
부당한 경영간섭	제18조
보복조치	제19조
탈법 행위	제20조

2.3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의무사항	관련 조항
서류보존 의무	제3조
건설 계약이행보증	제13조의2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제21조

3. 위반시 제재

3.1 하도급 사건처리절차



3.2 벌점부과

-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 초과 시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 (하도급법 제26조)
- 법 위반 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함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및 영향(하도급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1) 벌점 부과기준

경고 (서면 실태조사)	경고 (신고 및 직권인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일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기술탈취 보복행위	일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기술탈취 보복행위
0.25	0.5	1.0	2.0	2.5	2.6	3.0	5.1

2) 벌점에 따른 영향

구 분	영 향
3년간 3회 경고이상 처분 + 누산벌점 4점 초과	·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지정 (PQ신인도 -7점)
3년간 누산벌점 5점 초과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3년간 누산벌점 10점 초과	· 영업정지 요청

- 벌점 경감기준 ※ 2023.9.26. 개정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80% 이상 1점, 50% 이상 0.5점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최우수2점, 우수1점
수급사업자 피해의 자발적 구제	해당사건 벌점의 50%內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3점, 우수2점, 양호1점
현금결제비율 우수	100% 이상 1점, 80% 이상 : 0.5점
표준하도급계약서	90%이상 2점, 70%이상 1점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	50% 이상 1점, 50% 미만 0.5점
공정위 모범업체 선정	3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건 수	체결한 비율이 50% 이상 1점, 체결한 비율이 10% 이상 0.5점
연동 하도급대금증액비율	10% 이상 1.5점, 5% 이상 1점, 1% 이상 0.5점

7.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

- 벌점 누산점수 산정 : 직전 3년간(벌점부과점수 - 벌점경감점수)
 - 직전3년 :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 직권조사는 조사계획일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중 뒤의 날, 상습 범위반사업자 명단공표는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기준 역산

3.3 주요 제재

구 분	유 형
행정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시정명령, 권고 등)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법 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 기술유용 행위는 최대 5억원까지 부과) -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처분 위반, 허위 자료 제출 : 사업자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 · 조사 방해, 거부 : 사업자 2억원 이하 · 수급사업자 자료 제출 방해 : 사업자 5천만원 이하, 개인 500만원 이하 · 서면실태조사 : 사업자 500만원 이하
형사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부당경쟁간섭 금지 및 탈법행위 금지 위반 자 - 3억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조치 <p>※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p>
민사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 책임 - 하도급 핵심 불공정 행위 + 보복조치 ▶ 손해의 3배 손해배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당단가인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및 감액 금지) ② 부당발주취소(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③ 부당반품 금지 - 기술유용 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는 손해의 5배로 상향 조정 및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산정기준(상품 범위, 대가 수준, 기본 산정기준 등) 도입 ('24.02.27 개정)

4.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4.1 서면 발급 및 보존 의무 (제3조)

□ 개념

-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원칙

-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역무의 위탁 시 제외)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 서면발급 시점

-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와 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발급하여야 하며, 최소한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시작하기 전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함
 - －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나아가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교부에 대하여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 계약서면은 하도급 계약시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 하도급계약서면에는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에 해당
-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위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
- 추가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계약서 등을 미교부하는 경우도 하도급법 위반
- 추가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나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하도급법 위반
- 정당한 감액의 경우라도, 법 제11조 3항에 따라 감액서면 사전 교부 必
 - 법정 기재사항 [시행령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 ① 감액사유·기준 / ② 감액되는 물량 / ③ 감액금액/ ④ 감액방법 /
 - ⑤ 감액의 정당성 입증사항 등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을 추정하는 제도임
-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
-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함

□ 서류보존의무

- 위탁을 시작하기로 하는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음. 단, 기술자료 관련 서류는 7년간 보존하여야 함.
- 기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기재사항>

- ① 수급사업자의 명칭
- ② 위탁한 일
- ③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 : 계약금
- ④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기일
- ⑤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급부의 내용
- ⑥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한 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 기일
- ⑦ 검사결과
- ⑧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급부의 취급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 ⑨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에 대하여 변경 또는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 ⑩ 하도급대금
- ⑪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 ⑫ 하도급대금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그 증감액 및 이유
- ⑬ 지급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지급수단
- ⑭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한 경우, 어음 금액/어음을 교부한 일/어음의 만기
- ⑮ 원재료 등을 유상 지급한 경우는 품명/수량/대가/인도일/결제기일/결제방법
- ⑯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는 지연이자액 및 지연이자를 지불한 일
- ⑰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 또는 원재료 등의 대가를 공제한 경우는 그 후의 하도급대금의 잔액

사 례 1	
	현대중공업(주)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현장 발급해주었는데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음
공정위 판단	
	계약금액이 일정규모이면서 계약내용이 명백히 구분되는 거래임에도 양당사자의 날인이나 서명없이 발주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진 거래 건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서면으로 보지 않음
제 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

사 례 2	* 최신 심결례 ('23.4.10)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말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한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 미발급 하였고,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 기간 중 A사에 위탁한 해양플랜트 구조물 공사에 대해 추가로 작업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에 대한 서면미발급 하였음
제 재	시정명령

4.2 선급금 지급의무 (제6조)

- 개념
 - 발주자가 공사 착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하도급법상 선급금이라 함
- 지급방법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하여야 함.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함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만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준수 의무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어음만기일 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지연 지급시 지연이자 지급의무 등이 존재

① 현금결제비율 유지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② 어음만기일 유지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을 지급해야 함

③ 지연이자 지급 의무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주어야 하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1월 15일 선급금을 현금으로 받고 3월 30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60일에 대한 지연이자(연15.5%)를 지급해야 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임
-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지급한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월1회 기성정산 후 60일 이내 지급과 동조 제3항의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중 어느 조항으로 적용 또는 우선하는지에 대하여는 제 13조 제 3항은 동조 제1항의 보완조항으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제1항의 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할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한 것임

사 례	(주)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1월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열교환기 제관 제작’을, 2013년 7월 ‘유지씨씨(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A사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3억1,150만원을 ‘선급금 없음’ 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유로 법정지급기일인 15일내에 지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대로 반드시 지급 하여야 함
제 재	시정명령 / 교육 이수명령 / 선급금 이자 지급명령

4.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 개념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검사시간이 도과한 날이 목적물 인수일이 됨 (목적물 인수일 =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60일의 기산일)

□ 주요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됨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임.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 ① 검사의 방법
 - 검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췌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있음
 - ② 검사결과 통지기간(10일)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 납기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인정

되지 않음

- 거대한 건설공사(담·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서면통지가 원칙이므로 구두통지는 법 위반임
- 수급사업자가 매월 말일에 원사업자에게 기성청구 제출 경우 목적물 인수일은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원사업자가 기성검사를 하여 기성을 확정해 준 날이며, 검사결과통지 의무에 따라 10일내에 인수하여야 함

4.4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 개념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 시 기준일이 됨. 여기서의 목적물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함

□ 60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의 예외

- 일괄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봄. 즉,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추가공사 및 공사중단, 계약해지 등으로 정산이 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목적물 인수일은 정산시점에 불구하고 추가공사의 완료일, 공사중단일, 계약해지일 등을 목적물 인수일로 봄

□ 기간의 계산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 지연이자 지급의무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함. 예를 들어, 목적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30일이 만기인 어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30일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 현금결제비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액에서 현금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전체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도급대금보다 먼저 지급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현금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지급되는 도급대금 지급시점까지 하도급대금이 현금화된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

□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하도급대금은 현금 외에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사 례 1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는 2016. 1.~2019. 3. 기간 중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 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5,431천 원을 지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을 하여 하도급법 제13조 위반
제 재	시정명령 / 과징금 3,000만원 ('21.12.30)

7.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

사 례 2	* 최신 심결례 ('23.5.11)
<p>(주)레즐러가 2020.09.09.과 2021.05.17.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 한 후, 수급사업자가 각각 2021.01.06.과 2021.08.19.에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p>	
공정위 판단	
<p>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위반</p>	
제 재	시정명령

4.5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제13조의2)

□ 개요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이행보증(10/100)을 하여야 함

□ 보증 방법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야 함

□ 보증서 교부시기

- 지급보증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보증 금액(보증내용)

- 공기 4개월 이하 : 계약금액-선급금
- 공기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이내 :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4
- 공기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초과 :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 × 기성주기(월수)×2

□ 보증 면제

-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 ~~2개 이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 A0이상~~ → <2020. 7. 8.> 폐지 : **당사 보증의무 발생**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한 경우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원사업자는 지분비율에 의해 보증금액을 결정함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원사업자는 지분비율에 의해 보증금액 결정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가 되지 않음

사 례	* 최신 심결례 ('23.9.11)
두산건설은 2020.4.3.부터 2022.4.7.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 것은 법 제13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
제 재	시정명령 ('23.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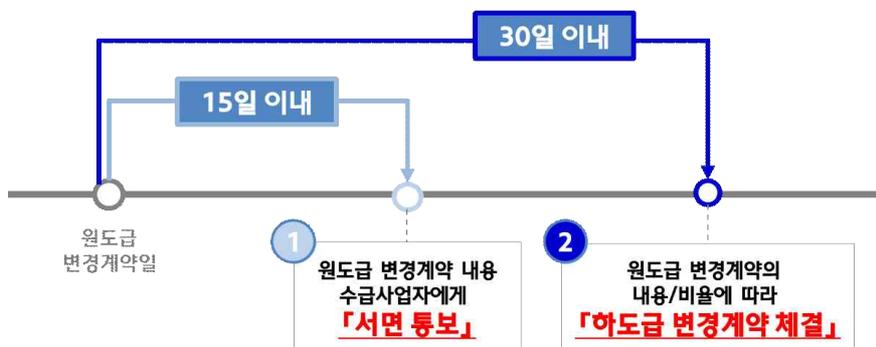
4.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제16조)

□ 개요

- 건설위탁등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도급계약이 증액(감액)된 경우, 변동된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증액(감액)**하여야 함

□ 요건

- 제조, 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하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음
-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 증액된 도급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 이 경우에도 제13조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규정 적용



□ 조정기준²⁰⁾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①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②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즉, 개별품목별로 조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세부공사 내역에 따라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함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 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함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 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 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조정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하여야 함

□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함
-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물가가 기간에 정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비례하여 물가 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
 - 발주자는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의 물가차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하도급계약 시점의 물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면 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과 같음

□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적용. 단, 전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 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어야 함
-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기지급된 선급금은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 가능함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공종의 경우에도 증액해 주어야 함
 - 단, 발주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해 조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조정함
-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금액을 조정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계약체결 60일 이내, 물가변동 조정률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 가능함
-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의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총액 조정방법이 일반적임
-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고 원사업자가 ESC를 적용받았다면 ESC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의 공사분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ESC를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정률은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ESC조정률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입증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사 레 1	* 최신 심결례 ('23.8.31)
(주)테크윈은 2021. 9. 3. 및 2022. 3. 31.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ESC) 및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증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증액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았고, 그 증액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않는 것은 법 제16조제3항,제4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	
제 재	시정명령

7.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

사 례 2	에스케이건설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을 이유로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 11. 25, 2011. 10. 6. 및 2011. 12. 8. 총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으므로,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각각 법정기한인 30일을 59일에서 437일 초과할 때까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함
공정위 판단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 받고도 8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 않는 것은 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
제 재	시정명령

4.7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제16조의2)



□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 공급원가 외의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를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말하고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됨
- 구체적인 조정대금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함

□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조정신청일부터 10일 경과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Fast Track), 협의 개시 후 합의에도 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써
 - ① 협의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조정금액이 상호간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③ 합의 지연 시 영업활동의 심각한 곤란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조정협의를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
 - 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²¹⁾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경우
 - ②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납품 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 조정 신청 사유 추가('20.5.27 시행)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이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 되는 경우

21) 하도급계약 체결일이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조정일을, 경쟁 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함

4.8 부당한 특약의 금지

□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 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 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안됨**

□ 위법성 판단기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 거래의 계약 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해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 법 위반의 유형

-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됨
-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임. 즉,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 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 또는 견적 착오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
-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 관련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 설계도면 등에 기재된 작업 공정, 품질·성능 검사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를 말함
- 하자담보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전가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함. 예를 들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화재·전염병·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 파업, 매장 문화재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
-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제한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직접 신청하거나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도급 계약기간 중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는 일부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에게 위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을 받을 권리, 법 위반 하였음을 관계 기관에 신고, 원사업자에 대한 조정신청 및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말함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말함. 또한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도 포함
-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및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함

-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및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을 말함. 또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포함
-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계약 해제, 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사 례	* 최신 심결례 ('22.3.10)
<p>1. 경남기업(주)는 민원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유형, 10건의 부당특약설정</p> <p style="margin-left: 20px;">* “발생되는 공사 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p> <p style="margin-left: 20px;">**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p> <p>2. 태평로건설(주)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제한하는 특약*,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부당특약을 설정</p> <p style="margin-left: 20px;">* “원도급사는기성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 20px;">**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p>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제2항 위반
--------	---

제 재	시정명령
-----	------

4.9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4조)

□ 개념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에 해당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위 처분에 더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 책임**(법 제35조 제2항).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별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판단기준

-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①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②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 ① 부당하다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②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 여부로 판단. 단,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으로 봄

□ 위반 유형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법 제4조 제2항 제1호)
 - 일률적 단가인하는 제조하도급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하나임. 그러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인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② 협조 요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법 제4조 제2항 제2호)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만큼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임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취급(법 제4조 제2항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 납기,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

7.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

- ④ 거래 조건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법 제4조 제2항 제4호)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임.
 -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협상 과정에서 종전 계약보다 발주량이 늘어날 것처럼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위법함
- 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법 제4조 제2항 제5호)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해야 함
-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법 제4조 제2항 제6호)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임. 여기서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에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재료비 및 노무비 이외의 제조원가 요소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함, 다만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 등이 포함됨.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법 제4조 제2항 제7호)
 - 만약, 원사업자가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최저가 낙찰자와 낙찰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협상을 한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⑧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법 제4조 제2항 제8호)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음.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 등 (예를 들면 경영적자,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판매부진,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함

□ 경쟁 입찰(법 제4조 제2항 제7호) 관련 판단 기준

-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 ※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정가격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정가격은 단지 원사업자 자신의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한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최저가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실행예산)을 상회하여 예정가격 수준에 맞추어 최저가 입찰 업체와 협상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하도급대금 상한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면 위반은 아님
- 입증책임 : 당해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 저가심의를 하여 심의 기준에 미달하는 최저가 업체를 탈락 시킨 후, 차순위 업체와 협상하는 경우, 저가심의를 부실시공이나 공기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면 적법함. 다만, 전제 조건으로 저가심의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 하였어야 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시 고려사항
 - 경쟁입찰 시 실행예산 이내인 경우 최저 투찰 업체와 입찰금액대로 계약하는 것은 무방하나, 시가보다 높다고 자체 판단하고 추가 협상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
 - 최저가 금액이 원사업자의 실행예산을 초과할 경우 유찰 후 재입찰을 실시한다고 입찰공고 및 현장 설명시 이를 반영하였다면, 범위만이 아님
 - 재입찰의 결과로서 입찰금액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거나 높아져서 해당 투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님
- 하도급대금 감액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

사 례
지에스건설(주)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 기간 동안 하남 및 대전 공사 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법 위반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인 19,805백만 원보다 1,134백만 원이 낮은 18,671백만원으로 결정

공정위 판단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제 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8억원 부과
-----	----------------------

4.10 부당감액 금지 (제11조)

□ 개념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함.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행위는 금지됨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발주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에 기재된 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됨. 값을 깎아준다거나, 협찬금, 할인 등의 감액의 명목, 방법, 금액의 다소를 불문함. 또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법 위반이 됨

□ 유의사항

- 다음 사항들의 대응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단가의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및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는 시점에 생기는 위반행위이나 하도급대금 감액은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을 사후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생기는 위반행위임
 - ‘제품을 싼값으로 수주하였다’ 등의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 이외에 감액분을 별도 협찬금 등으로 징수하는 경우도 부당한 감액이 됨
 - 수급사업자 사이에 단가인하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여 단가 조정이 되었어도 이 합의 전에 이미 발주된 것에 대해서까지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 : 구단가로부터 신단가로 인하하는 때에는 신단가는 단가 개정이 합의된 후의 발주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미 발주한 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감액이 됨
 - 어음을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사무 수수료로서 하도급대금에서 자사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한 액을 감액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은행구좌로 납입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없으면 하도급대금에서 은행납입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사업자가 부담한 실비의 범위 내에 한정함
 - 소비세, 지방소비세액 상당분을 지불하지 않는 것 또한 부당감액에 해당함
- 건설공사를 위탁함에 있어 현장소장과의 협의를 거쳐 견적가를 조정한 후 선시공하였으나, 후에 본사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견적가에서 현저히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선시공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견적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시공한 후에 견적가에서 현저히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위반소지가 있음

- 수급사업자의 작업반장이 사망한 산재사고 처리시 피해자측과 직접 합의하는 방법을 채택과정에서 합의보상비 중 일부 금액을 수급사업자의 협의 없이 부담하도록 결정하면서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산재발생율이 높아지면 공사 입찰시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이 되므로 산재보험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관행임. 그러나 일방적으로 합의금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감액행위에 해당함
- **부당감액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별첨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부당감액 예시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건설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하도급 계약후 추가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당초의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

사 례 1	
<p>(주)포스텍은 2012년 4월 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 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음. 이와 관련된 5개 수급 사업자가 그 작업의 내용, 거래 규모, 기존 작업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음. 또한 2011년 1월경 발주자로부터 단가 조정 요청을 받아,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음.</p>	
공정위 판단	
<p>작업의 내용, 거래 규모, 기존 작업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부당한 감액행위임</p>	
제 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사 례 2	
<p>동호건설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인수한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의 10%를 다시 돌려 받음</p>	
공정위 판단	
<p>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100% 현금지급을 대금지급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면서 현금 지급을 이유로 대금10%를 돌려받았으므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p>	
제 재	시정명령

4.11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제8조)

□ 개념

- 원사업자는 제조·건설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건설 등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됨
-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 부당한 발주 취소(수령거부) 예시

-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부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료 없는 막연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

- 선행공종이 지연되어 수급사업자가 시공해야 할 후속공종이 지연되는 경우
- 무리하게 공기를 일방적으로 단축한 후 공기지연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 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고객의 클레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 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정당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경우 수령의무는 없음
- 수급사업자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선고 신청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이 가능함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이 가능함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를 상당동안 지연하는 등으로 기간 내에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이 가능함

사 례

진성이엔지는 2012.1월부터 2013.6월까지 수급사업자영진테크에게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생산성이 낮은 자신의 생산라인 운영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위반
제 재	시정명령

4.12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제12조의3)

□ 개념

○ 기술자료의 정의

-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 요건

① 비밀 관리성

-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②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작업공정도, 작업지시서, 기계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방법, 시방서, 원재료성분표, 임상시험 방법 등

③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경제적 유용성)
-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전자과일접속·열람허용), 기술지도, 품질 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함.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7.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
 - <예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예시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예시 3>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위 정당한 사유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또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 '22.8월 시행

□ 기술자료 유용 행위

- 기술자료의 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됨
-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됨
-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有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 조사시효는 7년. 서류의 보존기간도 7년으로 규정 (일방 행위는 3년)

사 례 1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납품업체를 다원화 또는 변경하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2016년 1월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전달하여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내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자신이 도면을 전달한 제3의 업체에게 견적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공급처에게는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결과, 공급처를 변경하는 대신 2016년 4월 기존 공급처의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하였음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공정위 판단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음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사 례 2

엘지전자(주)는 2015. 6월부터 2018.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음

공정위 판단

엘지전자(주)가 5개 중소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44백만)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예시 (심사지침) >

<거래이전 단계>

<예시 1>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예시 2>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거래 단계>

<예시 3>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예시 4>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예시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예시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예시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예시 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예시 10>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거래이후 단계>

<예시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4.13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제 (제3조2항 외) ※ '23.4.10 시행

□ 개념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함
※ 하도급법의 상생협력법도 적용되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평균매출액또는 연간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건 모두 적용

□ 내용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수탁·위탁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 (10% 이상인지는 **각 원자재 별로 계산**되며 사용되는 원자재를 합하여 계산되지는 않음)
- 다만,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시한 경우에는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하도급거래(수·위탁거래)에 **연동사항을 약정서 등에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아래사항을 원칙적으로 포함
 - ①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 ③ 조정요건,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 하도급대금연동 산식,
 -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⑦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반영일

□ 유의사항

- 업체선정 시, 연동제 관련 **협력사협의 절차 반영**(입찰 단계, 계약 단계)
- 연동조건에 대하여 협력업체와 성실히 협의, **거래상 지위 남용 및 탈법행위 하지 않아야 함** (미연동강요 벌점 5.1점)
- (입찰시) 연동조건안내 및 (계약시) **연동특별약정서** or **미연동합의서 작성** 필요
- 조정 주기별연동 조건에 따른 증감 여부 확인
→ 연동조건에 따른 당사 분담금 발생 시 예산 증액 및 변경계약실시
→ 감액 사유 발생 시, 당사-협력사서명/날인 후 변경계약실시

□ 제재조치

- (약정서 미발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미발급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 부과
- (탈법행위*)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 부과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 * 탈법행위 :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4.1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5조)

□ 개념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 적용기준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위탁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시공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한 경우
- 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요구가 합리적이고 구속력 있는 요구이어야 함.

4.15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제12조)

□ 개념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계약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다음 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말함
 -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자기가 구입,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사전에 물품구매대금 등의 결제를 사전에 요청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 부당결제청구 예시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중장비 임대료 등을 당월 기성금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게 하는 행위 또는 장비임대업자의 통상적인 중장비임대료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행위

4.16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2조의2)

□ 개념

- 원사업자가 자기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금전과 서비스,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토록 하는 것. 하도급대금 지급과는 별도로, 협찬금, 종업원 파견 등의 의뢰가 해당됨

사 례	
	다인건설(주)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함
공정위 판단	
	다인건설(주)는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 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2조의2 위반(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제 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95만원

4.17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7조)

□ 개념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됨
-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 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음
-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

4.18 부당경영간섭 금지 (제18조)

□ 개념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안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봄
 1.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전속거래강요행위금지
3.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경영상의 정보 유형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 전략 관련 정보(제품개발·생산계획, 판매계획, 신규 투자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 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 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산재보험료 산출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범위만 아님

4.19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제19조, 제20조)

□ 보복조치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7.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

□ 탈법 행위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부당보복조치 및 탈법 행위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신고한 수급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력업체에서 배제시키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4.20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제13조의3) ※ '23.1.12 시행

□ 개념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규율 내용

- 반기(상반기, 하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를 매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 (지급수단:현금, 상생결제, 어음,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으로는 동 기구의 설치 여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신청 절차방법과 소요 기간을 공시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미공시500만 원, 주요 내용 누락 및 거짓 공시 250만원)

4.21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제3조의5) ※ '23.1.12 시행

□ 개념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 사유를 고지하여야 함

□ 규율 내용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등 종합심사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의 하도급거래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사유 고지**
- **개찰 후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고지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미고지시 1회당 100만원)

5. 하도급거래 유형별 체크리스트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입찰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입찰 진행시 재입찰 사유(실행예산 초과 또는 저가심의)를 협력사에게 명시적으로 안내(공지)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는가? ■ 수급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발주 및 계약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발급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가? ■ 계약일자가 실제 작업시작(착공)일 이전인가? ■ 법정 기재사항 누락 시 해당 상황 및 사유를 명시하고 작업진행 중 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작업지시서 발급 및 변경계약을 진행하였는가? ■ 추가·변경공사 작업 착수 전 당사 작업지시서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작업 지시서를 발급하였는가?
특약 검토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설명서의 해당조건이 하도급계약 서면에 내역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협력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항이 있는가? ■ 해당 조건이 관련 법령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당사의 부담/의무사항으로 되어있음에도 협력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 해당 조건이 당사(발주자 포함)의 설계변경, 지시 또는 협력사의 귀책 없는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업무에 대해 협력사에게 책임 지우는 사항이 있는가? ■ 해당 조건이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의 인정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가?
발주 취소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는가? ■ 발주자 또는 당사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한 후 공기지연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는가? ■ 발주 취소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의 투입된 비용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졌는가? ■ 현장설명서에 당사의 귀책없이 발주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물량이 줄어들 수 있음을 명기하고 사전 안내하였는가?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p>감액 금지</p>	<p>하도급법 제11조 (감액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단가 인하 하였는가? ■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금을 감액하였는가? ■ 물량축소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정한 서면을 협력사에게 교부하였는가? ■ 당초 계약과 달리 무리하게 납기/공기 단축 후, 이 기간 내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
<p>대금 지급</p>	<p>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15일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하는가? ■ 목적물 수령 후 법정 지급 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기간 도과시 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는가? ■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도급대금을 지급받는 현장의 경우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이 경우, 건설자재를 제조 및 용역 위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가? ■ 하도급대금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해당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공탁처리 하고 있는가?
<p>하도급대금 조정</p>	<p>하도급법 제16조2 (공급원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가격 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는가? ■ 30일 이내에 협의회가 이루어졌는가?
<p>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p>	<p>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가? (예) 공동특허 및 기술개발을 위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의 승인 규모를 정하기 위한 경우, 제품의 하자 원인규명을 위한 직접적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당사가 협력사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명기된 기술자료 요구서 발급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협력사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임의로 기술영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의 요구에 의한 제공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았는가? ■ 협력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목적을 벗어나 당사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협력사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는가?

6. 질의 및 응답

Q.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일괄 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여부는?

A.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하도급법상 적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일괄 재하도급이더라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음.

Q.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지 않아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

A.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급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할 의무가 원사업자에게 있음. 불확실성 및 예측하지 못한 사정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엄격히 금지됨.

Q. 계약서 서면교부 시 적법한 시점은? 또한 긴급상황으로 인해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적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Q. 기본 계약서 교부하고 발주는 전산망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A.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Q. 가단가는 금지되는가?

A. 가단가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함.

Q. 거래 당사자간 상이한 견해가 지속되어 계약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가?

A.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변경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갱신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견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Q.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A.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장래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성률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 바,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 Q.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추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려 면 하도급계약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성대금 지급분을 공제한 잔여 기성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가?
- A. 원사업자는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선급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미 선급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원사업자는 이미 지급한 기성비율만큼을 공제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 Q. 발주처로부터 전체 공사에 대한 선급금 20%를 수령하고, 이 중 일부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한 결과, 발주처와 계약한 도급금액의 120%일 경우 선급금 지급은?
- A.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하도급 금액에 발주자로부터의 선급금 수령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 Q.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가?
- A. 하도급거래 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이므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함. 즉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의 대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Q. 현금성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여부?
- A.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였더라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임.
- Q.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부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A.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책임을 부담하나, 지분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연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 다만, 하도급계약이 단독명의로 체결된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명날인한 공동도급사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의무를 부담.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Q.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청구서에 근거하여 지급 시, 수급사업자로부터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아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하도급법상 지급지연인지?

A.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은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수급사업자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임.

Q.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면 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면제되는지?

A.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강행규정으로 상호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Q.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예정금액이 당해 연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금액임을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가?

A.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계약하면서 당해 연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하여 입증되고,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원사업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아도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수 있음.

Q.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를 조정함에 있어 기존의 공종에 대한 추가 시공한 부분과 신규공종 추가의 경우 조정기준은 어떠한가?

A. 기존의 하도급단가가 있는 공종에 대한 추가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당초의 하도급단가를 유사단가로 보고 도급단가의 등락율(설계변경에 따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 기존의 공사내역과 상이하여 기존 하도급계약 내역서에 없는 신규공종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단가를 기초로 하여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함.

Q.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신발장, 씽크대 등을 제조위탁시, 위 시설물을 제작납품만 하고 원사업자가 설치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의무가 있는지?

A. 하도급법상 물가변동분 반영 의무는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위탁물을 제조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면 발주자로부터 적용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함.

Q.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발주처로부터 원도급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꼭 응해야만 하는 것인지?

A. 철근, 시멘트 등 건설 자재 가격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는 것이며,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위법임.

다만,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사유가 공급원가의 변동이 아닌 저가수주 등으로 인한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적자보전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협의 신청 내용 검토 결과 협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개시하지 않아도 됨.

Q. 계약서에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누락, 견적착오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약정한 경우 부당특약에 해당하는가?

A.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과실(견적누락, 착오)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주의해야 함.

Q. 정부발주 공사시 저가 하도급 심사의 대상이 되면 하도급법상 문제가 되는가?

A. 하도급법의 규정은 수의계약 시에는 직접공사비 이하, 경쟁입찰 시에는 최저가 투찰금액에 대한 추가 인하협상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도급에 대비하여 하도급대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에서 '통상적 지급되는 대가' 이하인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Q.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게 도급공사를 수주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가능한가?

A. 당초 예상보다 저가 수주를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액에 해당됨. 원가절감, 협찬금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에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

Q. 계약 중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는 경우와 당초 물량 정산을 하기로 하고 정산시 감액하는 경우의 각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A. 도급계약이 먼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의거하여 15일 이내 변경 내역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도급 계약 변경 없이 물량 감소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액시 서면발급 의무가 발생하여 정산협의 전 감액되는 물량과 감액방법,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Q. 환차손을 이유로 대금 결제수단(원화 및 달러화)을 임의로 변경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한 법 적용은?

A. 계약기간 중 이미 납품 완료된 물량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제수단 임의변경은 부당함. 단,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신규 납품분부터 결제수단을 원화 또는 달러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Q.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건설위탁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자재라는 이유로 고가의 자재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할 경우 물품구매 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

7.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A.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발주자의 요구) 물품구매 강제행위로는 볼 수 없으나, 계약 당시 고가의 자재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도 낮게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Q. 원사업자가 경영이 부실한 수급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해 자금지원 등을 하면서 업체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A. 자금지원을 이유로 경영지도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음.

Q.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한다면 하도급법상 문제가 되는가?

A.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음.

Q. 원사업자가 유상 지급한 원재료의 지급대금의 결제에 대하여 하도급대금과의 상계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일괄 결제하는 방법이 하도급법 위반인가?

A. 하도급대금과의 상계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시보다도 빨리 결제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있음. 즉, 별도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유상자재의 대금을 당해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보다 조기에 결제하도록 하여서는 안됨.

제8절 표시·광고법

1. 개요

1.1 의의

1.1.1 표시

- 사업자가 상품/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

1.1.2 광고

- 전단·팜플렛·건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빌튼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 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자기의 상품 외의 다른 상품,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고객 홍보용 자료도 광고에 해당

1.1.3 다른 법률과 관계

- 공정거래법
 - － 공정거래법²²⁾과 표시·광고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임. 따라서 표시·광고법이 우선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은 그 적용이 배제됨
- 부정경쟁방지법
 - － 부정경쟁방지법²³⁾과 표시·광고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임
- 소비자보호법
 - － 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11조의 표시, 광고의 기준과 표시·광고법은 각각 입법 목적을 달리 하므로 경합하여 적용(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아님)

1.2 위법성 판단기준

- 소비자의 오인성(誤認性)
 -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을 의미
 - －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22)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등

23) 광고에 의하여 원산지나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

말하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²⁴⁾

○ **공정거래 저해성**

- 부당한 표시·광고에 의해 소비자가 오인으로 잘못된 선택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빼앗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를 의미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2.1 거짓/과장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 예시
 - 상가분양광고를 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年 수익률 20%를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

2.2 기만적인 표시·광고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
- 예시
 - 분양물 가운데 위치한 타인 소유의 나대지를 녹지 공간으로 표시하여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2.3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사업자 등”)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예시
 - 인근시세에 비해 분양가 저렴
 - * A상가 : 1억원 (신촌역 부근, 3평)
 - * B상가 : 5천만원 (인천, 3평)
 - * C상가 : 7천만원 (남대문, 2평)

2.4 비방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24) 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두6965판결

3.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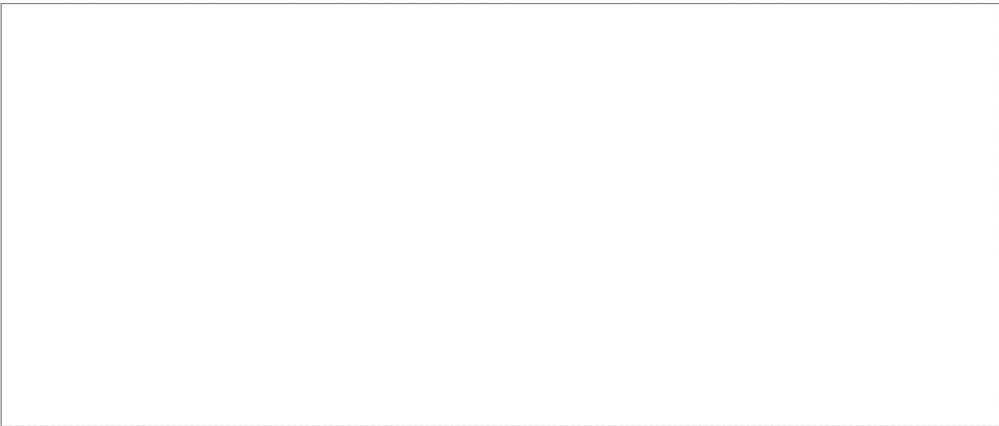
3.1 거짓과장광고

사 례 1

(주)대우건설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소재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건본주택에 각 분양 평형별로 4~18㎡ 크기의 전실을 조성하여 수납공간을 설치하고, 분양 전단 등에도 같은 내용으로 전실을 표현하여 광고하였음.

공정위 판단

이러한 광고행위는 해당 전실이 복도의 일부분인 공용 공간임에도, 마치 개별 세대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광고한 것으로 거짓 광고에 해당됨.



제 재 시정명령

사 례 2

피심인은 2013. 3. 9. ~ 2013. 7. 4.의 기간 동안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고 택지개발지구에 소재 '경동해피리움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광고 하면서 "광고최초! 임대수익보장!!(연720만원)", "1년 720만원 보장으로 10.5% 수익률(15형기준)", "12만 여명의 임대수요 확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단지 1년간의 임대료 상당액을 분양금액에서 감액해 줄 뿐임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장기간에 걸쳐 연 720만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을 내세워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및 주변시설의 고용인구나 유동인구만을 산술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12만여명의 임대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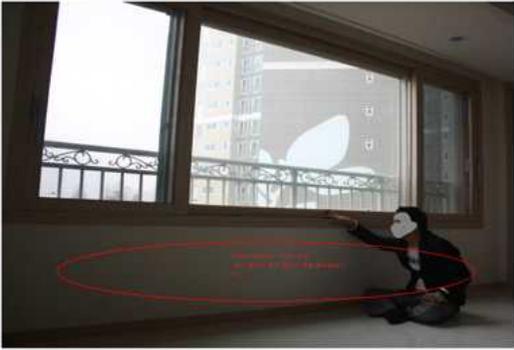
제 재 시정명령

3.2 기만광고

사 례

피심인은 인천논현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카탈로그에 ‘탁트인전망’, ‘양면의 창으로 와이드한 전망이 펼쳐지는 2면 개방형 거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고, 약 1mm의 크기의 글씨로 “입면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

〈그림1〉 조망이 침해되는 70세대의 거실



〈그림2〉 나머지 세대의 거실



공정위 판단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거실의 창문 구조가 일부 막혀 있어 거실에서 창을 통해 밖을 잘 내다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소비자가 잘 인식하지 못하도록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표시·광고**를 함

제재 시정명령

3.3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사 례

피심인은 광주광역시 운암동 “하늘세움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객관적 비교기준없이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분양가가 광주지역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월등히 낮은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하여 광고

“내집마련의 절호의 찬스(현재 광주에서 분양중인 아파트 중 35평형대의 파격적인 분양가 실시)”

아파트명	H 아파트(35평형)	H사(34평형)	L사(35평형)	D사(34평형)
평당분양가	398만원	495만원	451만원	485만원

공정위 판단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고 표시·광고하는 행위임

제 재 시정명령

4. 표시광고법의 실효성 확보 및 위반시 제재

4.1 중요정보 공개제도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율
 - 부동산 분양업종: ①건축허가 취득여부 ②대지소유권 확보여부 ③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④시행사, 시공업체명 ⑤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 벌칙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또한 부당 표시광고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음²⁵⁾

사 례
극동건설(주)은 2005.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전단지 및 신문 등을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명지스타클래스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법 제4조에 의한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정보 항목 중 '분양대금 관리방법',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등과 같은 2개 항목을 광고내용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정위 판단
피심의인은 2006. 12. 20. 위 행위사실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의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 피심의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4조 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

제 재	과태료
-----	-----

4.2 임시중지 명령제도

- 정식심결이 있을 때까지의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시키는 긴급조치
- 요건
 -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백히 의심될 것
 -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4.3 광고실증제도

-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함²⁶⁾
-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15일 이내에 실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광고중지 명령
- 실증자료 미제출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미실증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제재

25) 기만적인 표시광고

26)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

4.4 시정조치

-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법위반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과징금 부과 : 매출액의 2%이내, 관련매출액의 2%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을 곱한 금액, 매출액 산정 곤란한 경우 5억원 범위에서 부과
- 고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의 벌금
- 과태료 : 사업자는 1억원 이하, 임원 및 종업원은 1천만원이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위반, 실증자료 미제출, 임시중지명령 불응, 조사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

5. 주택분양 표시·광고행위 시 유의사항

5.1. 면적에 관한 표시·광고

- 주택의登記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이나 서비스면적 등을 포함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전용면적”을登記면적으로 표기
(×) 登記면적=전용+공용면적

-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외에 서비스면적이나 기타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면적”, “공급면적”, “총면적”, “--평형”등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 보다 넓은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공동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로 함
(○) 분양면적(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면적
(×) 분양면적=전용+주거공용+초과지하면적, 주차장면적 또는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
(×) 총면적=전용+주거공용+서비스면적(서비스면적의 내역을 표기하더라도 총면적에 계상불가)
(○) ○○평형=전용+주거공용면적
(×) 서비스면적이나 초과지하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평형”으로 표기하는 경우

5.2 교통·거리에 관한 표시·광고

-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광화문에서 전철로 10km거리”, “시청에서 버스로 10km거리” “창동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버스로 아파트에서 동인천역까지 5분” 등 기준지점과 교통수단을 명시한 경우
(×) “서울까지 30분 거리” 등 기준지점과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단,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서울역이나 광화문까지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30분이 소요되는 경우는 예외)

-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 「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 「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새벽에는 20분, 통상적인 출근시간대에는 50분이 소요됨에도 “자가용으로 아파트에서 영등포까지 20여분 출근거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교통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사업계획만 확정된 전철에 대하여 이용가능시기, 완공예정시기, “계획”이나 “예정” 등의 단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약도 등에 기재하거나 “○○전철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5.3 융자금·전세금에 관한 표시·광고

-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기관이나 융자금액·이자율·융자기간 등 융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융자기관과 사전협의를 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3000만원 융자, 연 11%” 등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실제 융자 신청시 융자금액이 작아지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 “융자관련 제반비용 부담 없음(현대건설부담)”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아파트 구입자들에게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융자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화재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회사사용자에 대해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2,300만원짜리 집을 800만원으로 입주가능! 용자 1,500만원”으로 표현하는 경우

-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인 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인근 동일조건 주택의 전세가액이 6,000 만원 이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 주택을 2,000만원으로 구입가능!-은행장기용자1,000+전세7,000-”라고 광고하는 경우

5.4 주택의 특징(재료·제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

- 주택에 사용되는 재료나 제품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한 것이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대리석 욕조”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욕조인 경우
 (×) 거실 앞 전면 유리창에 대하여 “채광·방음이 뛰어난 페어그라스 사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 주택에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설치함으로써 주택의 재료나 제품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 모델하우스도 광고물에 속함

예시

(×) 견본주택의 벽지, 장판, 욕조, 씽크대 등을 실제 주택의 것보다 고급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 광고된 주택의 재료·제품(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제품을 포함)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저품질 또는 저가의 것으로 변경시공함으로써 주택의 재료나 제품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견본주택에는 A사의 씽크대(A제품)를 설치하였으나 A제품의 품질로 인하여 실제로는 같은 품질, 같은 가격이상의 B사제품(B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 견본주택에는 대리석 욕조를 설치하고 “시공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한 후 대리석 욕조의 품질이나 입주자들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프라스틱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

5.5 주택환경·생활여건 등에 대한 표시·광고

-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의 비전이나 막연한 추측상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지역에 36홀 규모의 골프장 추진중!(실제는 인허가 준비단계에도 있지 않은 상태임)
 (×)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예정!(실제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에도 없음)
 (×) 택지지구 지정, 아파트지구 지정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대규모주택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투기를 조장하는 용어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강남지역에 마지막 남은 주택단지!”라고 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울시민이 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광고하는 경우
 (×) 실제 주택으로부터 도보로 쉽게 갈 수 없는 거리(1km이상인 경우)에 있음에도 “○○ 학교가 바로 앞”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 수영장 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사업계획만 확정된 백화점 등에 대하여 이용가능시기, 완공예정시기, “계획”이나 “예정” 등의 단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약도 등에 기재하거나 “주변에 ○○백화점 위치”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5.6 견본주택·조감도 등

-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의 유무,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조감도, 카탈로그, 팸플릿, 약도 등에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다만, 장래에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예정시기를 명시하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명기하여 표현하는 것은 무방

예시

- (×) 건립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기관(회사)에서 건립계획” 등의 단서를 붙여 조감도에 그리는 경우
- (×) 표시·광고시점에서 건설계획만 확정된 지하철노선의 역위치를 완공시기를 표기하지 않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달지 않고 약도에 기재하는 경우

- 견본주택을 설치하면서 상가 등에 실제 사용될 재료보다 우량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로 시설하여 당해 상가 등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 견본주택의 인테리어를 실제 상가보다 고급으로 사용하는 경우
- (×) 모델하우스에는 A사가 제작한 벽장을 설치하였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실제로는 같은 규격, 품질의 B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의 것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 견본주택에는 대리석 욕조를 설치하고, “시공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플라스틱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

5.7 건물인증 등에 관한 사항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예시

- (×) 산업자원부로부터 “에너지효율 2등급건물인증(본인증, 예비인증 포함)”을 받았음에도 1등급인증을 받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 에너지효율 2등급 건물 예비인증을 받았으면서 본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에 “예비인증”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표시·광고하는 경우
-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하위등급(예, Ⅲ등급)의 인증을 받았으면서 상위등급(예, Ⅱ등급)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p>예시</p> <p>(×) 산업자원부로부터 에너지효율건물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동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p> <p>(×)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을 받았으면서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에 “예비인증”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표시·광고하는 경우와 예비인증조차 받지 않았음에도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p>
--

6.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 행위시 유의사항

6.1 상가 등의 명칭

- 상가·호텔 등을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명칭을 사실과 달리 백화점, 특급호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설립·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것처럼 분양물의 명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p>예시</p> <p>(×) 일반상가의 허가를 받아 놓고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p> <p>(×)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급 등의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마치 특급 호텔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p>
--

6.2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마치 시행자, 시공자 등 다른 자가 분양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p>예시</p> <p>(×) 분양 표시·광고에 분양자의 명칭은 표기하지 않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행자나 시공자 또는 그 양자를 표기하거나 ② 분양자가 속한 계열그룹만 표기하거나 ③ 분양자나 분양대행자, 또는 모텔하우스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는 경우 <p>(○) “분양자 ○○기업, 시행자 ○○상사, 시공자 ○○건설”, 또는 “분양 및 시행자 : ○○회사, 시공자 : ○○건설(주)”이라고 나란히 표기할 경우</p> <p>(×) 원래 분양자인 A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한 실제 분양자가 마치 원래 분양자가 분양하는 것처럼 “A상가”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p>
--

- 시공자의 상호나 상징마크 등을 상가 등의 명칭에 포함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 마치 시공자가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8. 표시광고법

- ① 시공자가 상가 등 건축물의 건축·시공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 ② 분양 표시·광고시와 그 이후에도 계속 시공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시공자와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분양 표시·광고에 분양자 보다 시공자의 명칭을 크기, 색상 등의 면에서 현저히 눈에 더 잘 띄게 표기함으로써 마치 시공자가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 A건설회사(주)는 상가건물의 시공만 맡고 운영은 B회사가 하는 경우인데도, 상가명칭을 A쇼핑, A종합상가라고 하거나 또는 명칭에 A회사의 로고를 넣어 분양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 (×) 시공자인 ○○건설이 상가의 품질이나 영업전망 등에 관하여 추천 또는 권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건설에서 자신 있게 권장하는 상가”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 분양지는 분양 표시·광고 구석에 작게 표기하고 시공자를 중앙에 크게 표기하는 경우

6.3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현황

- 일정한 위치나 구역의 점포에 대하여 업종을 지정하거나 단순히 업종만을 기재하여 표시·광고하고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분양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 “지정업종은 분양실적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의 단서 없이 불링장, 실내수영장, 극장 등을 지정업종으로 표시·광고하고 사후에 다른 업종으로 분양하여 입점시킨 경우
- (×) 분양 표시·광고에서 업종을 지정한 경우, 실제 분양시 지정된 특정업종(예: 약국)이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 다른 업종으로 지정된 점포(예: 슈퍼마켓 등)를 그 특정 업종으로 분양하는 경우

- 피분양자의 자격 또는 수, 피분양자를 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 사실과 다르게 “특정지역(경기도) 거주자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 (×) 단순히 “선착순 분양”이라고 표시·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부 또는 모든 점포를 입찰 등 선착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점포수를 명시할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지 않음)

- 분양 표시·광고시 점포의 분양계획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특히 은행, 극장, 불링장, 체육시설 등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대중

8. 표시광고법

이용시설의 분양여부에 관하여 표현할 경우 이미 체결된 분양계획서 등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함

예시

- (×)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 사실과 다르게 “○차분 ○개 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 : 1”, “최고경쟁률 18 : 1”, “전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 ○○은행지점이 입점계약서에 기명날인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만 한 상태에서 “○은행지점 입점확정”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건물의 공사진행 상황이나 입점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6.4 상권

- 상권에 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익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주변점포 전세금이 분양가격을 상회하는 상권”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 OO공사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 확정 등의 근거 없이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 유일한 상가”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근에 연금매장 등 실질적인 상가가 있는 경우

6.5 재산가치, 수익성

-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지가(地價)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 우위의 재산가치 입증”,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상가”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8. 표시광고법

-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단순히 임대금액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2천만원 투자시 월 100만원 이상의 임대수입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6.6 부동산의 가격, 분양면적

- 상가 등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분양가격이나 권리금 등을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분양가 3천만원, 부가가치세 3백만원인 상가에 대하여 단순히 “분양가 3천만원!”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현재 주변상가의 권리금은 2천만원(10평기준)정도인데 “분양(입점)후 권리금이 2천만원~4천만원선 확실”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자신이 다른 지역에서 분양하던 상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데 불과함에도 “파격적인 분양가, 주변상가보다 50% 저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금액에 대하여 인근 동일조건인 것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사실과 다르게 “인근 타상가의 2배에 해당되는 높은 임대료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분양가격, 권리금, 임대차계약 등의 지불조건 또는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분양금 분할납부시 상당한 이자가 부담되는데도 “무이자 3회 분할납부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지불기간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장기할부”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상가 등의 분양면적을 점포별 또는 매장별로 표기하여 분양 표시·광고하는 경우. 전용면적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예시
 (×) 점포별 공용면적 5평, 전용면적 5평인 점포를 분양하면서 단순히 “점포당 10평의 넓은 매장”이라고 기재하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6.7 품질, 부대시설, 별도계약품목

- 상가 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카탈로그에는 점포 바닥마감재를 고급 대리석으로 쓰는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내고 실체는 값싼 자재(일반목재, 타일 등)를 쓰는 경우

- 급·배수, 가스, 전기, 오토메이션, 무인경비 등의 부대시설이나 별도 계약품목의 품질에 대하여, 혹은 그 설비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조건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편의시설의 공사 등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됨에도 “모든 편의시설 제공”이라고 표현하여 무료로 시설해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피분양자가 분양가외에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설치하여 주는 무인경비설비에 대하여 단순히 “완벽한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상가입점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고객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6.8 용자전세금 등

- 용자금액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금액을 표기하거나 용자기관 또는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용자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용자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과격적인 용자혜택”, “특급용자 5천만원”, “점포

당 2천만원~3천만원 장기·저리 신용대출”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용자의 조건으로 특정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서 단순히 “금융기관
 용자실시”, “별도담보 없이 용자가능”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할부금융회사와 용자약정을 맺은 경우 “할부금융회사가 연 ○○%로 천만원을 최장
 ○○년까지 용자가능(단, 점포담보 조건임)”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
 가 되지 않음

- 용자를 단순히 알선만 하면서도 용자기관, 이자율, 상환기간 등의 조건을 표기함으로써
 마치 용자가 확정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에 해당

예시

(×) ○○은행○○지점에 용자를 알선만 해주면서도 “○○은행용자실시”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6.9 건축허가 등 인·허가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
 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부당
 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

예시

(×) 건축허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상가의 평면도, 조감도 등을 통하여 분양상가의 층
 별 분양 업종을 지정·표시하여 분양광고하는 경우

또는 계약과정에서 상가의 층별 분양업종이 지정된 평면도, 조감도 카탈로그, 전단 등을
 제시하며 계약하는 경우

(○)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음”, “토지매입 후 건축심의단계임” 또는 “건축허가 신청단계
 임” 또는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음” 등이라고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6.10 콘도미니엄 표시·광고

- 일정기간 동안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모집에 불과
 함에도 공유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예시

(×) 소유가 가능한 회원권분양이라고 표시·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일정금액의 보증금만
 내고 일정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보장에 불과하면서도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콘도이용 회원모집임에도 “소유하십시오” 등 “소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실의 공유와 이용지분에 따라 연간이용가능일수 및 성수기 이용가능성이 제한됨에도 성수기 예약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

예시

(×) 콘도사업자가 분양계약 1개 구좌당 분양계약자 수를 감안하여 볼 때 성수기 100%예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예약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연계 체인망 콘도 등을 직영콘도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콘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됨

(×) 전국적인 체인망 또는 해외 체인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서 갖추고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연계체인망에 불과한 콘도를 직영콘도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아직 공사착공조차 되지 않았거나 완공이 되지 아니한 콘도시설을 이용 가능한 콘도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6.11 기타 거래조건

- 피분양자가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혜택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분양된 상가의 임차인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불과한데도 “높은 가격으로 100% 재임대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인근 창고시설 무료이용”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상가 등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등 분양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사실과 다르게 “분양 당첨시 상가소유에 필요한 등기절차 등 일체의 법적조치 무상 대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7. 부당표시광고 예시

7.1 주택

- 건축허가 내용과 상이하면 허위광고
- 확정되지 않은 지하철노선 및 지하철역을 개통예정인 것처럼 광고
- 사실과 다르게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 바로 인접한 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에도 지역 최고의 조망권이 확보되는 것처럼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분양후 1억원 이상의 엄청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처럼 광고

7.2 상가

- 금융기관이 시행사 대신하여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광고
- 분양물(쇼핑몰)에 대한 점포임대수익 지급을 약정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마치 임대수익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
- 객관적 근거 없는 사례를 게재하여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
- 분양률이 저조함에도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광고
- 미래에 대한 단순 예상수익률임에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연 수익율 15% 보장)
- 특정한 시기에 상가개점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 사실과 다르게 주변 점포의 권리금이 높게 형성된 것처럼 광고
- 인허가 검토 중임에도 지하상가의 출입구가 인근 주변 상가와 직접 연결되는 것처럼 광고
- 사실과 다르게 주변상권에서 독점적 이익을 누리는 것처럼 광고
- 단순히 입금계좌를 개설한 것에 불과함에도 자금관리기관인 것처럼 광고
- 상가의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외 100여개 유명 브랜드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입점 순간부터 1억원 이상의 엄청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처럼 광고

7.3 오피스텔

- 객관적 근거 없이 안정적인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 최저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광고
-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파트와 유사하게 침실, 주방, 드레스룸, 거실 등으로 칸을 구획함으로써 업무시설인 분양물이 마치 공동주택인 것처럼 광고
- 사실과 다르게 복층형 구조의 오피스텔 건축이 적법절차에 따라 가능한 것처럼 광고
- 오피스텔임에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아파트인 것처럼 광고

8. 표시·광고 행동지침

-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한 홍보물 제작, 확정적인 수치 등 표현에 주의
- 전단, 안내문, 사은품 등 고객 홍보용 자료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
- 사소한 민원이라도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규제기관에 신고될 우려
⇒ 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에 유의할 것
-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확대 또는 과장하여 설명하는 행위 지양
- 광고 문안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전문가가 아닌 평균 이하의 지적 수준을 지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성 검토
- 광고적으로 기발한 표현이라도 경쟁사 비방 광고 지양
- 부당 표시·광고 사건은 고의 또는 과실 불문
⇒ 사소한 부주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부동산 분양 관련 부당광고행위의 책임은 1차적으로 시행사(시공사)에 있음
⇒ 분양대행사 등의 관리에 철저 : 분양 시 사전 교육 필요
- 시행사가 분양광고 업무를 시공사에게 위탁할 경우, 시공사도 책임
- 당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고지 필요 (은폐는 기만광고에 해당)
- 모텔하우스 내 표시물, 홈페이지 상 문구도 주기적으로 점검
(신고자는 당사에 불리한 표시광고 사항을 수집하여 증거물로 제출)

9.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

시정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위반행위 중지 (향후 재발방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정정 광고
과징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범위
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하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택법에따른 영업정지 가능(3~6개월)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거부 방해 및 기피 시 과태료 부과 (최대 2억원) ■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최대 1억원)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제9절 약관법

1. 개요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법 제1조)
- 약관이란?
 -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며(법 제2조 제1항) 약관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 첫째, 일방당사자가 작성한 것
 - 둘째,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에 사용하기 위한 것
 - 셋째, 특정한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한 것

※ 당사는 주로 분양(공급)계약서가 적용 대상

2. 주요 내용

2.1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함
- 설명의무의 대상 - '중요한 내용'
 - 설명의무의 대상은 ‘중요한 내용’에 한하므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약관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의무까지 발생하지는 않으며, 특히 ‘중요한 내용’인가의 판단기준은 고객의 이해 관계와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
 - 법원은 ‘중요한 내용’의 판단기준으로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²⁷⁾이라는 기준을 제시
 - 내용상으로는 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에 대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 되었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함²⁸⁾

27)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28)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대법원 1994. 10.25. 선고 93다39942 판결

9. 약관법

- 명시·설명 의무의 예외
 - 약관의 규정이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 명시·설명 의무의 상대방
 -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고객이나, 대리인과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
-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
 - 사업자가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법 제3조 제3항) 즉, 명시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되지 않은 약관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음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명시·설명 의무 위반의 효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당해 계약은 무효
 -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 약관해석의 원칙

-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는 원칙
-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제한 해석하여야 함

2.3 불공정약관조항

2.3.1 일반원칙²⁹⁾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며, 아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함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9)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9. 약관법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불공정한 약관조항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
 -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 계약의 해지는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지를 통지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임에도 재판의 승소/패소 여부나 패소비율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소송비용 일체 또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조항

사 례	원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발주자에 의하여 원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면 피심의인은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
-----	---

공정위 판단	원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의 조치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파산등으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증의 목적에 부합함. 따라서 이 조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일 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불공정약관으로 인정됨
--------	--

제 재	삭제 또는 수정명령
-----	------------

2.3.2 면책조항의 금지³⁰⁾

-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조항을 말함
- 법률상 책임이란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의무위반책임, 불법행위책임도 포함
- 일단 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약관조항이나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은 무효임.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함.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30)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9. 약관법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위험의 분담은 채권의 목적이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급부 불능) 그로 인한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계약의 취지에 더 합리적인가 하는 고려에 따름

사 례	
<p>대우건설의 대우IBC 디오빌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제9조[공급면적의 계산] 제②항의 공급면적 증감에 따라 제1조의 공급대금 등에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일 전에 공급 당시의 가격(공급면적 기준 평당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고 그 발생차액을 상호 정산한다. 단 1% 미만의 실 공급면적 증감은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p>	

공정위 판단	
<p>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민법 제572조, 제580조)</p> <p>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권 분양에 있어서 당초에 예정했던 급부내용과 실제 급부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며, 비록 그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된 극소한 경우일지라도 사전에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p> <p>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1% 미만의 실 공급면적 증감은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3호에 해당됨</p>	

제 재	삭제 또는 수정명령
-----	------------

2.3.3 손해배상액의 예정³¹⁾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는 것임. 이는 실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실손해의 산정이나 입증이 복잡하고 당사자간의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보다 중요한 목적은 채무의 불이행시 고액의 배상액을 지불토록 약정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 ‘부당하게 과중한지’의 여부는 거래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31)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예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의 실제손해액이 예상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별도로 연체료까지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 례
 에스티에이건설 주식회사의 분양계약서 제19조(위약금 등) 제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3조에 의한 분양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기납부한 분양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환불한다. 단, 공제 후 남은 환불금의 지급 시기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공정위 판단
 부동산거래분야에서 일방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계약해지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금원으로서 통상 거래대금의 10% 정도이며, 연체료는 본래 계약이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 일방의 사유로 인해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것이 거래관행 이자 판례의 취지임.
 그러나 피심의인의 위 약관조항은 수분양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계약존속을 전제로 하여 부과하는 연체료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계약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해당됨

제 재 삭제 또는 수정명령

2.3.4 계약의 해제·해지(법 제9조)

- 민법의 해제·해지 관련 규정(민법 제543조~제553조)을 무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9. 약관법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지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족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지/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고객의 해지/해제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지/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 - 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에도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해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사업자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지/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지/해제시에 고객이 원상회복의무를 사업자보다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 -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해제 되었음에도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일부만을 환불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지/해제 된 경우에 이미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이자 및 연체료를 제외하고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지/해제되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금을 반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을 붙이는 조항

<p>사 례</p>	<p>대우건설의 대우IBC 디오빌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③ 제①항 및 제②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을”은 위약금으로 총 공급대금의 10%를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기수령한 공급대금 중 대출 원리금과 위약금을 임의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기납부한 공급대금에 대한 이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p>
-------------------	--

<p>공정위 판단</p>	<p>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것이 금전인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 제548조의 내용일 뿐 아니라 계약해제시의 기본원리임. 따라서 피심의인은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금 중 대출원리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급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급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시 기납부한 공급대금에 대한 이자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위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p>
----------------------	--

경감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됨	
제 재	삭제 또는 수정명령

2.3.5 채무의 이행³²⁾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타당한 제한사유를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에게 자유재량권을 인정하여 일방적인 급부 변경권을 부여하는 조항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2.3.6 고객의 권익보호³³⁾

-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업자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을 박탈함이 타당함에도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32) 약관법 제10조【채무의 이행】

33) 약관법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함에도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

2.3.7 의사표시의 의제³⁴⁾

-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
 - 일정한 지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예시

-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고객은 동의를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고객이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고객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형/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
- 사업자가 의사표시에 관하여 발신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거나 연착이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고객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사 례

건설사들은 공사 중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 세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

공정위 판단

해당 약관 조항은 입주 예정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샘플 세대를 지정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등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주 예정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 ('19.4.29)

제 재	삭제 또는 수정명령
------------	------------

34) 약관법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2.3.8 대리인의 책임가중(법 제13조)

- 고객의 대리인에게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 대리인이 그에 대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이 그 이행을 책임진다는 조항

2.3.9 소제기의 금지 등³⁵⁾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법원으로 정하는 조항

사 례
<p>리베라종합건설(주)의 ‘리베라 아이누리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6조(기타 사항)</p> <p>(10)“을”은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을 청약시 사전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않음</p> <p>(11)“을”은 인근 도로 등의 인접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 및 전기선로 등의 근접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비록 양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사전에 예상치 못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및 수정 등 이의제기 절차가 허용됨이 타당하다 할 것임</p> <p>그러나, 피심의인의 위 약관조항에서는 매수인에게 향후의 일조권 등의 침해 상태를 청약당시 사전 인지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통상의 일반인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심각히 저해하는 상황 발생시에도 사전 인지하였다는 이유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되어 무효임</p>

2.3.10 업무 시 유의사항

35) 약관법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9. 약관법

-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시 “부당하게 과중한”의 판단기준
 -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경위, 배상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경제상태 종합 고려
- 약관 변경은 계약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자의 합의가 필요
 - 약관 변경 시 고객은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약관의 존속,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함

3. 불공정 약관의 영향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함

3.1 시정조치

- 사업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3.2 시정명령

-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시정조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3.3 금지 권고

- 시정조치 권고 및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 시 당해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3.4 약관의 심사청구

-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는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가능

3.5 벌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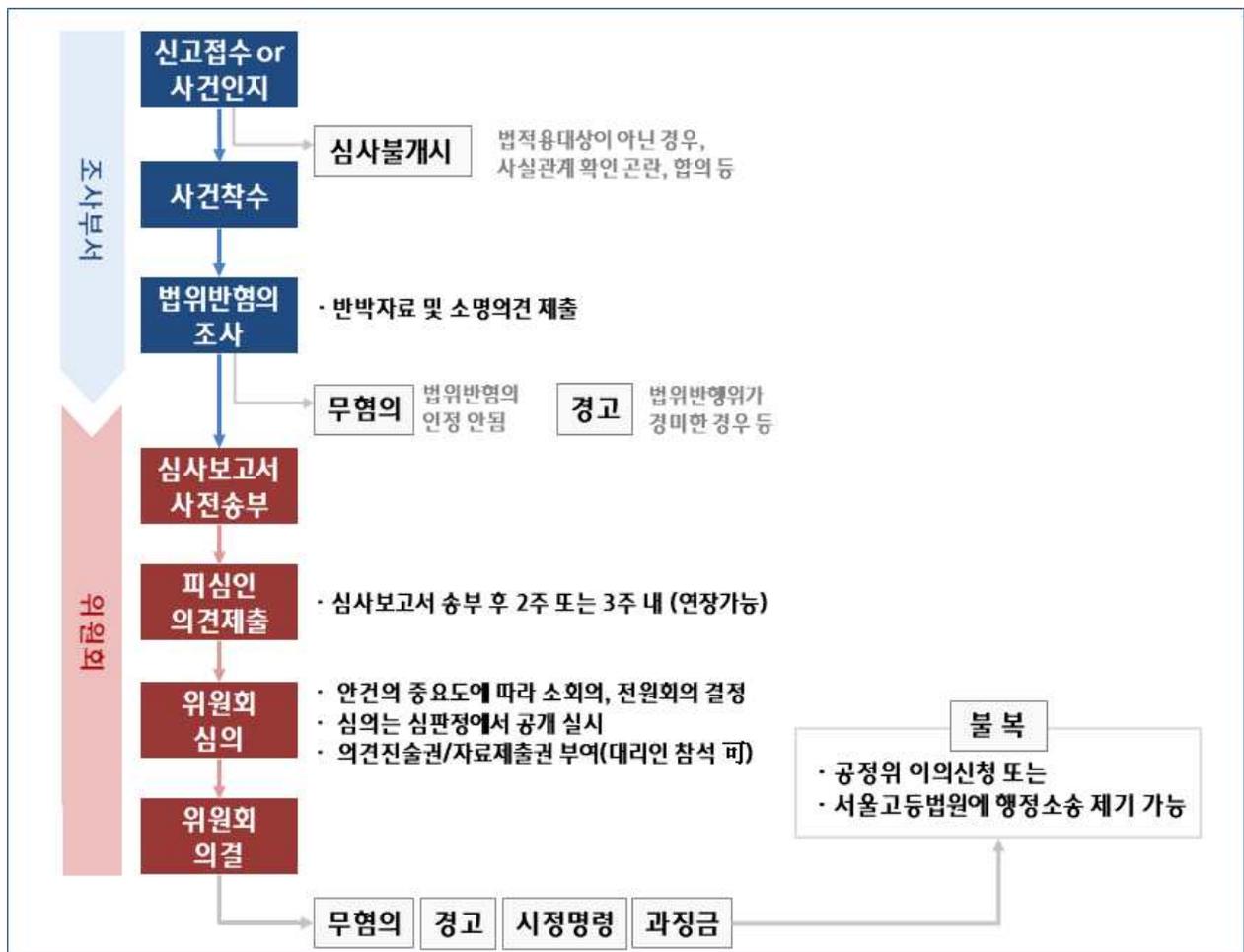
-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정명령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과태료)

제10절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

※ 사건처리절차 흐름도



2. 심판기능으로서의 공정위

구 분	전원회의	소회의
의 장	위원장	상임위원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64조 ①항)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64조 ②항)
소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 등의 제·개정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공정거래법 제5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건 - 승인·인정·인가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3. 조사절차

3.1. 조사 주체

- 사무처 소속의 사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5개국(경쟁정책국/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기업거래정책국)과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3.2. 조사 단서

- 사건의 조사는 ‘신고’ 또는 조사관의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되며,
- 직권발동은 주로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조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과 같이 연초에 조사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이뤄짐

3.3. 배당과 사전심사

- 신고 또는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된 개별사건은 담당과정에 의해 개별 조사공무원(통상 사무관)에게 배당되며,
- 배당받은 조사공무원은 당해 사건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사전심사하며,
- 사전심사결과 ① ‘피조사인이 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②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③ ‘5년의 조치시효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불개시결정”을 내리며
- 사전심사 결과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착수보고”를 하게 됨

3.4. 사건번호·사건명 부여와 조사의 실시

- 사건착수보고가 이뤄지면, 심판관리관실에서 ‘사건번호’와 ‘사건명’(예: 2008공동12000에 대한 건)을 부여함으로써 정식으로 하나의 조사사건이 되며,
- 이후 조사공무원은 조사권을 발동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함

3.5.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

(1) 약식절차 회부

- 당해 조사사건이 소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 피 심인이 이를 수락하면 “약식절차”에 회부하며,
- 약식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없이 위원들의 서면결의로 처분이 결정되나,
 - ① ‘심사관조치의견에 고발이나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된 경우’ 또는
 - ② 피심인이 심사관조치의견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됨

(2) 위원회 상정

-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공표명령 등의 처분이나 형사고발조치 등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며 사무처장은 자신의 명의로 조사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며,
- 이 때 중요한 사안은 ‘전원회의’에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에 각각 상정하며,
- 외국의 경쟁당국은 조사사건의 위원회 상정 여부에 관하여도 위원회가 결정(예:일본의 심판개시결정)함에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일방적으로 상정할 수 있음

(3) 심사보고서의 송부 및 의견서 제출 고지

- 조사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됨과 동시에, 심사관은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고지하며,
- 실무상으로는 심사관이 사전에 심판관리관과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일자를 잠정적으로 정한 후 그 일자의 약 3~4주 이전에 조사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함과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이때 피심인에게는 심사보고서 중 “심사관조치 의견”을 빼 나머지 자료(즉 ① 표지, ② 제안이유, ③ 행위사실, ④ 위법성 판단, ⑤ 적용법조, ⑥ 첨부자료)만이 송부됨
- 피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4. 심판절차

4.1. 심판 주체

- 위원회이며, 안전에 따라 중요한 사안은 “전원회의”가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가 담당
- 전원회의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부위원장 포함)과 4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위원 4인은 3인의 대학교수와 1인의 변호사로 구성
- 의장의 직은 위원장이 수행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수행
- 소회의는 총 3개이며, 각 소회의는 1인의 상임위원과 2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의 직은 상임위원이 수행

4.2. 주심위원 지정과 심결보좌

- 주심위원은 법원의 주심법관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심결보좌기구의 보좌를 받으며, 전원 회의 사건에서는 위원장이 임의로 주심위원을 지정
- 심결보좌는 심판관리관실이 담당하며, 심판관리관실의 3개 담당관(경쟁심판/협력심판/소비자거래심판)은 상임위원 3인과 일대일 대응관계로 심결보좌업무를 수행하고,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작성·보고

4.3. 심의기일 및 장소의 지정

- 심의기일은 의장이 지정하며, 피심인에게는 지정된 일자의 5일전까지 통지하며,
- 통상 전원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로, 소회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되며, 피심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심의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주심위원의 의견을 들어 이를 허가할 수 있음
- 심리장소는 위 심판정으로 지정(단, 지방사무소에서의 순회심판은 예외)

4.4. 심의

-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 하는 과정으로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참가,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

4.5. 합의

- 합의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원칙적으로 심의가 종료된 당일에 마쳐지며,
- “위법성 인정”에 대한 합의 후, ‘시정조치’·‘과징금부과’·‘범위반사실’·‘공표명령’·‘형사고발’ 등의 “제 재수단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합의를 하며,
-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회의는 3인의 만장일치로 의결
- 소회의의 경우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전원회의에 회부

4.6. 의결서 작성

- 의결서는 심판관리관실에서 작성하며, 원칙적으로 합의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작성

4.7. 의결 결과 통지

- 합의 결과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심사관이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이로써 피심인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

4.8. 불복절차

(1) 4.8.1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 공정위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30일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공정거래법 제96조)
- 시정조치 명령을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가능 (공정거래법 제97조)

(2) 4.8.2 행정소송

-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 (공정거래법 제99조, 제100조)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4.9. 사전 심사 청구 제도

-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관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해주는 제도를 말함
-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의견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확약의 효력이 발생
- 다만, 구체성이 없는 경우 자료부족으로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확정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 함

4.10. 동의의결제도

-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불공정기업 판정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공정위 역시 법 집행의 효과를 통상적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구현하면서도 피규제자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음

- 소비자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통상의 시정조치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가격 인하, 손해보상 등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정위 처분 시효는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함 **※ 공정거래법 개정 ('23.6.20)**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